
회의자료

8기 2년 정기대의원대회

일시 : 2014.12.08.(월) 10시 -
장소 : 삼산 근로자복지회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회의자료 순서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4
대회사	5
격려사	7
상징마크	9
선언	10
강령	11
금속노조가	12
금속노조 울산지부 대의원 명단	13

보고자료

8기 1년차 사업보고	21
금속노조 8기 2년차 사업계획 보고	63

안건자료

안건1호. 8기 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89
안건2호. 8기 2년차 사업계획 확정 건	131
안건3호. 8기 2년차 사업예산 확정 건	149
안건4호. 금속노조 8기 2년차 중앙위원 선출 건	159
안건5호.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161
안건6호. 기타안건	163
안건7호. 결의문 채택 건	165
<별첨> 울산지부 규정	169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1부 개회식

개회선언	사회자
깃발 입장	사회자
민중의례	사회자
세월호 유가족과의 간담회	사회자
내.외빈 소개 및 임원 및 지회장 소개	사회자
8기 지부장 대회사	지부장
격려사	노조임원
연대사	내외빈
금속노조가 제창	전체

2부 본회의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의장
서기 및 감표위원, 사찰 지명	의장
회순통과	의장
안건토론	의장
결의문 채택 및 낭독	의장
폐회선언	의장

대 회 사

존경하는 울산지부 확대간부 동지여러분!
먼저 8기 2년차 대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동지들과 함께 2년차를 시작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박근혜 정부와 이 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갈수록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던 봄이건, 뜨거운 여름이건,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이건, 차디찬 겨울이건, 한결같이 온국민을 피명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해결되지 못하고 정권의 철저한 왜곡과 외면 속에 유가족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간담회를 통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11월 중순부터 박근혜 정부는 연일 정규직 과보호 폐지, 고용유연화, 노동시장 개혁과 해고요건 완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더니 이젠 중규직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극대화시켜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말해 왔습니다.

갈수록 노골화되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싸우는 힘은 단결뿐입니다.

물론 그 동안 노동자의 삶에 엄중하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결과 연대투쟁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들이 악랄함이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단결력의 느슨함이 있다는 것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이제 모든 시작과 끝은 오직 단결입니다.

그리하여 반노동, 반민주, 독재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부와의 싸움에 물러섬 없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이며 금속노조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울산지부의 확대간부 동지여러분!

우리가 세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깃발을 지키며 자랑스레 투쟁하는 노동자가 됩시다.

동지들을 믿고 8기2년차에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투쟁!

2013년 12월 0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장 최용규

격려사

자랑스런 금속노조 지부 대의원 동지들!

우리는 올해 금속노조의 단결투쟁 힘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금속노조의 파란 깃발을 꽂고 민주노조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의 정리해고 조합원들은 아직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 했습니다. 많은 투쟁사업장이 올해도 거리에서 공장에서 추위와 싸우며 고용안정과 해고 철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은 올해 완전히 쟁취하지 못 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탐욕스럽고 악질적인 자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방조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 분노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절규하는 유가족의 울분을 현장의 정서를 핑계 삼았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세월호 학살을 전면적인 노조의 문제로 받아 안지 못 한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남겨진 미완의 투쟁 과제들은 내년 2015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대목들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종북공세와 노동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사유화, 영리화를 중단 없이 밀어 붙이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 벗어나 노조법 개악을 통해 대대적으로 노동자의 목을 죄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내년은 제2의 노개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공세적인 요구를 가지고 노조법 개정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정상화, 임금체계 개악 저지 등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금속노조는 2015년 조기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공세적으로 노조법 개악저지와 개정투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힘으로 실노동시간 단축과 월급제 개선,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미래 전략을 확보하여 고용안정을 획기적으로 안착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지 여러분!

내년이 되면 15만 금속노조가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했던 15만 금속노조가 또한 많은 우여곡절을 거둬들이며 표류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조직혁신으로 금속노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듯 금속노조는 내년 ‘노조법 개정투쟁과 금속산별노조 혁신 강화’를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부 대의원 동지들의 결단과 의지는 금속노조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지부 정기대의원대회는 이런 투쟁을 향한 단호한 결의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을 조직해서 2015년 투쟁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0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전규석

상징마크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 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질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안는 통 큰 단결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 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강 령

【조직】 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 우리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 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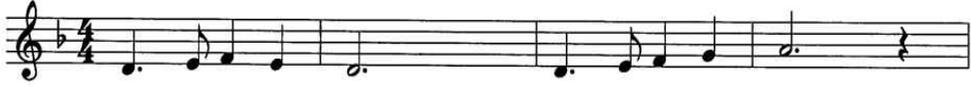
【국제연대】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측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속노조가

김호철 글,곡



노 동 자 의 길 해 방 의 길 에
깃 두 를 수 복 옥 강 하 게



당 당한 역 사의 합 성이 되어 우 리 는 간 다



피 로써 뭉 쳐진 강 철의 대오 아 금 속 노 조 여



나 가 자 성 벽을 깨고 죽 음의 사 선을 넘 어
말 하 라 의 처를 러라 민 중의 선 봉에 서



노 동 자 없 이 해 방의 나라 기 필 요 쟁 취하 리 라
너 나 없 이 평 양한 나라 기 필 요 쟁 취하 리 라

울산지부 대의원 명단

순번	소속	이름
1	지부장	최용규
2	고강알루미늄지회	강태희
3	고강알루미늄지회	김복일
4	고강알루미늄지회	황대산
5	고강알루미늄지회	이상원
6	고강알루미늄지회	곽인수
7	고강알루미늄지회	김상보
8	고강알루미늄지회	최향오
9	덕양산업지회	김병훈
10	덕양산업지회	권혁준
11	덕양산업지회	이성희
12	덕양산업지회	김태욱
13	덕양산업지회	권형우
14	덕양산업지회	최우영
15	덕양산업지회	신원철
16	덕양산업지회	이찬규
17	덕양산업지회	황상진
18	덕양산업지회	유중순
19	덕양산업지회	장상관
20	덕양산업지회	류양인
21	덕양산업지회	엄재억
22	덕양산업지회	권영환
23	덕양산업지회	박성재
24	덕양산업지회	박천원
25	덕양산업지회	김정수

순번	소속	이름
26	덕양산업지회	공석
27	덕양산업지회	공석
28	덕양산업지회	공석
29	덕양산업지회	공석
30	덕양산업지회	공석
31	덕양산업지회	공석
32	덕양산업지회	공석
33	덕양산업지회	공석
34	덕양산업지회	공석
35	덕양산업지회	공석
36	덕양산업지회	공석
37	덕양산업지회	공석
38	덕양산업지회	공석
39	현대메티아 울산지회	권중현
40	현대메티아 울산지회	서영오
41	현대메티아 울산지회	이용재
42	현대메티아 울산지회	정주환
43	현대메티아 울산지회	공석
44	현대메티아 울산지회	공석
45	세종공업지회	정영덕
46	세종공업지회	전상민
47	세종공업지회	오유훈
48	세종공업지회	명재관
49	세종공업지회	황재윤
50	세종공업지회	손봉남

순번	소속	이름
51	세종공업지회	김영창
52	세종공업지회	정연찬
53	세종공업지회	김신규
54	세종공업지회	김운동
55	세종공업지회	차영철
56	세종공업지회	강민우
57	세종공업지회	이철구
58	세종공업지회	김능원
59	세종공업지회	박인철
60	세종공업지회	김봉암
61	세종공업지회	김종범
62	세종공업지회	정명화
63	세종공업지회	권오혁
64	세종공업지회	임성효
65	세종공업지회	금득용
66	세종공업지회	이수형
67	세종공업지회	박성현
68	세종공업지회	공석
69	세종공업지회	공석
70	세종공업지회	공석
71	한국TRW지회	박창훈
72	한국TRW지회	노승현
73	한국TRW지회	박승인
74	한국TRW지회	차현철
75	한국TRW지회	엄병철

순번	소속	이름
76	한국TRW지회	박재석
77	한국TRW지회	김무식
78	한국TRW지회	배복한
79	한국프랜지지회	차주근
80	한국프랜지지회	이동율
81	한국프랜지지회	박승봉
82	한국프랜지지회	박현민
83	한국프랜지지회	최용재
84	한국프랜지지회	정해무
85	한국프랜지지회	조기현
86	한국프랜지지회	전조환
87	한국프랜지지회	구봉수
88	한국프랜지지회	이흥기
89	한국프랜지지회	김국남
90	한국프랜지지회	박태경
91	한국프랜지지회	김홍한
92	한국프랜지지회	이달희
93	한국프랜지지회	김일곤
94	한국프랜지지회	백희동
95	한국프랜지지회	김건재
96	한국프랜지지회	권현준
97	한일이화지회	이영석
98	한일이화지회	박인숙
99	한일이화지회	최재원
100	한일이화지회	이상태

순번	소속	이름
101	한일이화지회	김종해
102	한일이화지회	서현성
103	한일이화지회	정다운
104	한일이화지회	이종술
105	한일이화지회	이평호
106	한일이화지회	박성진
107	한일이화지회	권혁식
108	한일이화지회	남만희
109	한일이화지회	이정훈
110	한일이화지회	구형규
111	한일이화지회	김중규
112	한일이화지회	손현호
113	한일이화지회	권기보
114	한일이화지회	오영국
115	한일이화지회	김원대
116	한일이화지회	정용우
117	한일이화지회	이재환
118	한일이화지회	김종건
119	한일이화지회	황성현
120	한일이화지회	강성학
121	한일이화지회	김현경
122	한일이화지회	공석
123	한일이화지회	공석
124	한라공조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권태호
125	한라공조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안대우

순번	소속	이름
126	한라공조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박인우
127	한라공조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장대석
128	한라공조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이영도
129	한라공조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김학선
130	한라공조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김영수
131	한라공조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공석
13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하창민
133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공석
13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공석
135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김민기
136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윤석용
137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하광기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 8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자료

8기 1년차 사업보고

금속노조 8기 2년차 사업계획 보고

보고

8기 1년차 사업보고

1. 조직현황보고

기간: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단위 명)

월별 지회	2013년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 고
고강알루미늄	110	111	111	110	111	111	113	115	115	115	115	115	
덕양산업	547	547	547	547	547	547	541	541	541	541	533	533	
현대메타아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세종공업	495	494	494	495	494	494	490	490	490	490	489	489	
한국프랜지	359	359	359	359	359	359	349	349	349	349	349	349	
한국TRW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34	134	
한라공조 사내하청	144	144	143	144	144	143	148	143	145	145	145	140	
한일이화	468	468	468	468	468	468	477	484	482	482	481	48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28	29	28	28	29	28	31	32	34	33	35	37	
SLT			26	26	26	26	26	해산					
말레동현				65	65	65	65	65	62	62	62	62	
삼성SDI						16	16	16	16	16	16	16	
개별	12	8	5	8	8	9	9	9	9	10	9	7	
합계	2,386	2,387	2,411	2,477	2,478	2,476	2,500	2,479	2,372	2,478	2,474	2,469	

2. 회의보고

1) 대의원대회

□ 정기대의원대회

- 일시 : 2013년 12월 02일
- 장소 : 신명 교육연수원

1. 개회선언

2. 자료수정

p.21 7기 1년차 사업보고-> 2년차 사업보고

p.100 7기 1년차 4/4분기 -> 2년차 4/4분기로 수정

p.141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및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의 건'->'민주노총 중앙위원 파견대의원 및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의 건'으로 수정

○ 성원 확인

재적인원 116명/ 참석 106명

○ 서기 및 감표위원 사찰위원 임명

- 서기: 고은아 교육부장
- 감표위원: 3번 김복일, 18번 류양인, 40번 한병열, 84번 안계수
- 사찰은 사무처

○ 회순 통과

○ 보고사항

의장이 일괄설명

- 질의 없음

- 안건1호> 7기 2년 사업 총괄평가 및 결산 보고
 - 원안통과.

- 안건2호 8기 1년차 사업계획 확정 의 건
 - 원안 통과.

- 12시 정회

- 13시 속개

- 안건 3호 8기 1년차 사업예산안
 - 원안통과

- 안건 4호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및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의 건
 - 원안 통과.

- 안건 5호 지부 감사위원 선출
 - 선관위 진행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 1시 20분 속개
 - 구덕모 선관위원 진행
 - 노승현 선관위원, 고은아 선관위 간사
 - 투표결과 발표(106명 참가 94명 투표)
 - 안준식 / 김병진 / 이상순 당선

- 안건 6호 결의문 채택의 건
 - 민중대회-> 시국대회로 수정.
 - 원안 통과

- 결의문 낭독- 한일이화 정다운 대의원

- 13시 50분 폐회

□ 임시대의원대회

- 2014년 3월 10일 09시~17시
- 장소 : 신명 교육수련원

1. 개회선언

2. 자료수정

3. 성원확인

대의원 총수: 135명

재적인원: 115명

참가인원: 103명

4. 개회선언 - 13시 17분

5. 서기 및 감표위원, 사찰지명

서기- 고은아 교선부장

감표위원 - 집행부

사찰지명- 이상원대의원, 한병열대의원, 박병덕대의원, 김성환대의원

6. 회의순서

- 원안통과

7. 본회의

1) 보고사항

- 금속노조 2014년 투쟁방침
- 사무국장이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

2) 안건사항

안건1호. 2014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및 투쟁방침 확정의 건

- 지부장이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
- 질의 및 의견없음
- 원안통과

안건2호. 기타안건

- 없음

안건3호. 결의문채택의견

- 원안통과

8. 결의문 낭독

9. 폐회 - 14:30

2) 운영위원회

8기 1년차 운영위 회의 보고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8기 1차	13년 10/07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농성잔 지지방문 건 2.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시국회의 건 3. 기타안건
2차	10/14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부 각 위원회 위원장 인준 건 2.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서울상경투쟁 조합원 출정식 연대 건 3. 기타안건
3차	10/21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노총 결의대회 건 2.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건 3. 현중사내하청 집중투쟁 및 지회 규칙 승인 건 4. 대의원 선거구 확정 건 5. 기타안건
4차	10/28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중사내하청 2차 집중집회 건 2. 전교조 사수 울산시민 결의대회 건 3. 투쟁기금 사용승인 건 4. 기타안건
5차	11/04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조직 건 2. 금속노조 7기 사업평가 및 8기 사업계획 토론 건 3. 기타안건
6차	11/11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 최종범열사 투쟁 건 2. 금속노조 제 36차 정기대의원대회 조합 정기표창 추천 건 3. 기타안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7차	11/18	한국프랜지 지회 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1월 투쟁계획 건 2.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일정 건 3.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모범 지회 및 모범조합원 표창 추천 건 4. 기타안건
8차 (수련회)	11/26	고강알루미늄 지회 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7기 2년 사업평가 및 8기 1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건 2. 감사위원 선출 건 3. 금속노조 8기1년차 중앙위원선출 건 4.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건 5. 기타안건
9차	12/10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월 투쟁계획 건 2. 금속노조 8기 1년차 조직진단사업 건 3. 민주노총 중앙위원, 파견대의원 및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4. 기타안건
10차	12/16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종범열사 투쟁계획(안) 토론 건 2. SLT 지회설립 승인 건 3. 2014년 6.4지자체 금속노조울산지부 후보 승인 건 4. 기타안건
11차	12/23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월 ~ 1월 투쟁계획 건 2. 기타안건
12차	12/30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면투쟁 건 2. 지부 투쟁사업비 사후 승인 건 3. 기타안건
13차	14년 1/06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면투쟁 건 2. 기타안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14차 (긴급)	1/08	지부사무실	1. 1/9 파업투쟁 점검 및 중집결정사항 집행 점검 건 2. 기타안건
15차	1/13	덕양산업지회 사무실	1. 1월 투쟁 계획 건 2. 기타안건
16차	1/20	지부사무실	1. 1월 ~ 2월 투쟁 계획 건 2. 노동안전보건 조합원 및 확대간부 교육 건 3. 한일이화지회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합의 승인 건 4. 기타안건
17차	1/27	지부사무실	1. 노조 투쟁 계획 현장토론 건 2. 당면 투쟁 계획 건 3. 기타안건
18차	2/4	지부사무실	1. 통상임금 관련 토론 건 2. 기타안건
19차	2/17	세종공업지회 사무실	1. 2014년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및 투쟁방침 (초안) 검토 건 2. 울산지부 임시대의원대회 일정 건 3. 2.25 국민총파업 진행 건 4. 기타안건
20차	2/21 (긴급)	지부사무실	1. 2.25 국민총파업 진행 건
21차	2/24	지부사무실	1. 2014년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및 투쟁방침 (초안) 검토 건 2.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대의원배정 건 3. 2.25 국민총파업 집행 점검 및 3월 투쟁 계획 건 4. 통상임금 현장대응 순회 교육 일정 건 5. 기타안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22차	3/04	덕양산업지회 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4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및 투쟁방침 (초안) 검토 건 2. 8기 1년차 노조 지회장 교육 소집 건 3. 3.8 울산여성대회 참가 및 간담회 건 4. 기타안건
23차	3/17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삼성자본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참가 건 2. 기타안건
24차	3/24	한일이화지회 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삼성SDI 울산지회 설립 승인 건 2. 기타안건
25차	3/31	덕양산업지회 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레동현지회 설립 승인 건 2. 울산지부 교섭위원 운영방안 토론 건 3.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의 달 사업계획 건 4. 2.25 총파업 평가 건 5. 기타안건
26차	4/7	세종공업지회 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부집단교섭 일정 및 교섭위원 운영방안 검토 건 2. 투쟁사업비 지출 승인 건 3. 2.25 총파업 평가 건 4. 조직발전 전망 기초토론 건 5. 기타안건
27차	4/14	한국TRW지회 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공동위원회 관련 검토 건 2. 기타안건
28차	4/21	현대메티아 지회 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공동위원회 관련 검토 건 2. 지부교섭위원 수련회 건 3. 기타안건
29차	4/28	지부사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4주년 세계노동절 울산대회 건 2. 기타안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30차	5/12	고강알루미늄 지회 사무실	1. 현중사내하청지회 산재사망 투쟁계획 건 2. 기타안건
31차	5/19	한국프랜지 지회 사무실	1. 5월 당면투쟁 조직 지침 건 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형석열사관련 긴급지침 건 3. 기타안건
32차	6/02	현대메티아 지회 사무실	1. 6월 투쟁 계획 건 2. 기타안건
33차	6/09	한국TRW지 회 사무실	1. 민주노총 1차 시국대회 참석 건 2. 기타안건
34차	6/16	세종공업지회 사무실	1. 6월 투쟁계획 건 2. 갑오농민항쟁 역사기행 건 3. 기타안건
35차	6/23	덕양산업지회 사무실	1. 15만 시기집중 총력투쟁 계획 및 7.22 동맹파업 조직을 위한 투쟁계획 건 2. 전교조 공대위 투쟁계획 건 3. 기타안건
36차	6/30	한국프랜지 지회 사무실	1. 7월 투쟁계획 집행 점검 건 2. 투쟁사업비 승인 건 3. 기타안건
37차 (수련회)	7/07	한일이화지회 사무실	1. 7.22 동맹파업 및 금속노조 1차 총파업 관련 토론 건 2. 730 재보선 투쟁관련 분담금 건 3. 기타안건
38차	7/14	덕양산업지회 사무실	1. 지부 쟁대위 구성건 2. 7.22 1차 총파업 집행 점검 건 3. 기타안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39차 (1차쟁대위)	7/21	고강알루미늄 지회 사무실	1. 지부 7월 - 8월 사업계획 건 2. 지부 사업비 목간전용 건 3. 기타안건
40차 (2차쟁대위)	7/28	세종공업지회 사무실	1. 2014년 임단투 투쟁계획 토론 건 2. 815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조직 건 3. 기타안건
41차 (3차쟁대위)	8/11	한국TRW지 회 사무실	1. 8월 투쟁계획 토론 건 2. 815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조직 건 3. 기타안건
42차 (4차쟁대위)	8/18	한라공조사내 하청지회 사무실	1. 8월 - 9월 투쟁계획 토론 건 2. 기타안건
43차 (5차쟁대위)	8/25	현중사내하청 지회 사무실	1. 8월 27일 지부 결의대회 건 2. 엔시스 구조조정 분쇄 천막농성 지지방문 건 3. 기타안건
44차 (6차쟁대위)	9/01	지부사무실	1. 9월 3일 지부 결의대회 건 2. 기타안건
45차 (7차쟁대위)	9/15	세종공업지회 사무실	1. 9월 투쟁계획 토론 건 2. 기타안건
46차 (8차쟁대위)	9/25	광화문 농성장	1. 9월 투쟁계획 토론 건 2. 기타안건
47차 (9차쟁대위)	9/29	무룡산 정상	1. 8기 2년차 가예산 심의 확정건 2. 기타안건

3. 7기 2년차 주요 투쟁사업 집행보고

2013. 10월

	10/29 전교조사수 울산시민 결의대회 (교육청)	10/30 현중하청 원직복직 보고대회 (전하문)	10/30 전노대 집중선전전 (명촌교복단)	11/1 국정원규탄 촛불문화제 (울산대공원)
고강알루미늄	6			5
덕양산업	7			
현대메티아				
세종공업	8	1	1	6
현중사내하청	3	6		
한국TRW	5	1	1	2
한국프랜지				
한라공조	2		1	1
한일이화				
지부	8	7	3	5
삼성전자서비스				
개별	4	2		2
총 원	43	17	6	21

2013. 11월

	11/9 비정규직 철폐 전노대 (여의도)	11/10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시청)	11/15 촛불문화제 (스타벅스앞)	11/23 고최종범추모 및삼성규탄집회 (남울산센터) / 시국대행진
고강알루미늄		11	3	4
덕양산업		13		4
현대메티아		5	4	8
세종공업		23		6
현중사내하청	17	17		5
한국TRW		25	3	10
한국프랜지		13		3
한라공조		10		2
한일이화		19		7
지부	3	10	5	10
삼성전자서비스	15	32		20
개별		13	2	3
총 월	35	191	17	82

2013. 11월

	11/27 삼성 천안두정센터 천안의료원 1박2일	11/28 학교비정규직 파업집회 (울산시청)	11/30 밀양희망버스 1박2일	
고강알루미늄	2	2	2	
덕양산업	2		1	
현대메티아	총회	총회		
세종공업	2	상집수련회	6	
현중사내하청	1	1	8	
한국TRW	2	상집수련회	8	
한국프랜지	1	4	3	
한라공조	2	1		
한일이화	1	1		
지부	7	8	4	
삼성전자서비스	2			
개별		2		
총 일	22	19	32	

2013. 12월

	12/7 삼성집회(본관)/ 비상시국회의 (서울역-행진)	12/11 철도파업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부산역)	12/12 학비파업 전조합원 결의대회 (교육청)	12/18 이운남 열사1주기 추모문화제 (현중정문)
고강알루미늄	14	2		9
덕양산업	4	2	1	
현대메티아	7	1	1	
세종공업	12	4		5
현중사내하청	3	-		10
한국TRW	5	2	2	5
한국프랜지	4	3	3	4
한라공조	5	1	1	
한일이화	7	1		
지부	11	6	4	6
삼성전자서비스	16			
개별	1		1	1
총 일	89	22	13	40

2013. 12월

	12/21 시국대행진 (울산대공원) /행진	12/22 민주노총침탈규 탄결의대회 /행진	12/23 민주노총침탈 규탄대회 (울산시청) /행진	12/26 건설기계 부분파업 결의대회 (시청남문)
고강알루미늄	4	3	6	
덕양산업	1		4	
현대메티아	2	1	2	
세종공업	8	15	4	3
현중사내하청	4	1	1	
한국TRW	2		8	
한국프랜지	1		5	
한라공조	4		3	
한일이화	5		1	
지부	7	5	9	3
삼성전자서비스				
개별	3	2	1	1
총 일	41	27	44	7

2013. 12월

	12/26 민주노총침탈 규탄 촛불문화제 (스타벅스)	12/28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서울시청)		
고강알루미늄	10	16		
덕양산업		14		
현대메티아	2	13		
세종공업	5	15		
현중사내하청	1	6		
한국TRW	4	13		
한국프랜지		8		
한라공조		8		
한일이화		11		
지부	3	13		
삼성전자서비스		9		
개별		2		
총 원	25	128		

2014. 1월

	1/9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 (울산대공원-새 누리당-공원)	1/18 민주노총 결의대회 (울산시청-스타 박스)		
고강알루미늄	16	9		
덕양산업	28	2		
현대메티아	9	5		
세종공업	42	7		
현중사내하청	4	2		
한국TRW	16	6		
한국프랜지	23	-		
한라공조	22	2		
한일이화	25	5		
지부				
삼성전자서비스	9	7		
개별	1	9		
총 일	3	2		

2014. 3월

	3/1 민주평화 대행진 (성남동)	3/7 삼성전자 서비스 권역별 결의대회 (부산센터)	3/8 여성의날 (롯데)	3/15-16 유성 희망버스 (옥각교 -아산공장)	3/28-9 삼성규탄 상경투쟁 금속 결의대회 (서울)
고강알루미늄	9	2		4	7
덕양산업	-	3	3	4	5
현대메티아	6	1		2	3
세종공업	13	1		상집수련회	4
현중사내하청	-	-		3	-
한국TRW	5	2		2	8
한국프랜지	5	-			2
한라공조	5	-		2	-
한일이화	2	1	5	5	1
에스엘티이	12				
지부	7	3	10	7	4
삼성전자서비스		66			66
개별	8				
총 원	72	79	18	29	100

2014. 4월

	4/1 건강권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	4/3 삼성SDI퇴근 선전전	4/9 5.1절 출근선전전	4/9 근로복지공단 규탄 결의대회
고강알루미늄	2	1		5
덕양산업	3		2	3
현대메티아	2		3	2
세종공업	3		3	3
현중사내하청	4	1		5
한국TRW	1	2		3
한국프랜지				
한라공조	1			
한일이화	2	1	1	3
에스엘티이				
지부	5	4	4	4
삼성전자서비스				
개별				
총 원	23	9	13	28

2014. 4월

	4/25 현중하청노동자 산재사망규탄집 회	4/30 노동절 집회		
고강알루미늄	3	15		
덕양산업		16		
현대메티아	5	8		
세종공업	4	18		
현중사내하청	17	10		
한국TRW	2	16		
한국프랜지	5	10		
한라공조		1		
한일이화	5	15		
에스엘티이				
지부	5	9		
삼성전자서비스		30		
개별				
총 원	46	148		

2014. 5월

	5/17 세월호 촛불문화제	5/23 현중산재사망 추모 집중집회		
고강알루미늄	5			
덕양산업				
현대메티아		1		
세종공업	6			
현중사내하청				
한국TRW				
한국프랜지		2		
한라공조	2			
한일이화		4		
에스엘티이				
지부	4	3		
삼성전자서비스				
개별				
총 원	17	10		

2014. 6월

	6/17 전교조 교육주체결의 대회(교육청)	6/20 삼성규탄! 세월호진상규명 전국노동자대회 역삼역-삼성	6/23 전교조 울산교사대회	6/26 6.28총궐기 출근선전전 (덕양사거리)
고강알루미늄	6	13		제외
덕양산업		12		7
현대메티아	3	4	2	4
세종공업	6	21		1
현중사내하청		-		
한국TRW	3	지회수련회	2	2
한국프랜지		10		
한라공조		8	1	1
한일이화		21		1
지부	6	9	3	5
삼성전자서비스		19		
개별	1			민주노총4
총 원	25	117	8	25

2014. 7월

	12/7 삼성집회(본관)/ 비상시국회의 (서울역-행진)	12/11 철도파업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부산역)	12/12 학비파업 전조합원 결의대회 (교육청)	12/18 이운남 열사1주기 추모문화제 (현중정문)
고강알루미늄	14	2		9
덕양산업	4	2	1	
현대메티아	7	1	1	
세종공업	12	4		5
현중사내하청	3	-		10
한국TRW	5	2	2	5
한국프랜지	4	3	3	4
한라공조	5	1	1	
한일이화	7	1		
지부	11	6	4	6
삼성전자서비스	16			
개별	1		1	1
총 일	89	22	13	40

2014. 8월

	8/12 울산 과학대 집회	8/14-15 8.15 전노대 범국민대회 (서울역-시청)	8/19 확대간부 파업 결의대회 (한라공조)	8/22 2차 총파업 (지회별 파업4H)
고강알루미늄		20	6	123
덕양산업		-	19	250
현대메티아	5	8	8	6
세종공업		20	20	496
현중사내하청	11	-	2	-
한국TRW		7	15	131
한국프랜지		4	20	130
한라공조		1	25	153
한일이화		8	16	200
지부	3	13	7	
삼성전자서비스		1		
개별		12		
총 일	19	101	141	1,489

2014. 8월

	8/22 신화ENG 규탄 결의대회 (현중정문)	8/27 3차 총파업 (울산문화예술회 관 / 4H)	8/29 4차총파업 (지회별파업 /6H)	8/29 홈플러스 전면파업 결의대회 연대투쟁 (홈플 야음점)
고강알루미늄		18		4
덕양산업		28		
현대메티아	7	10	11	9
세종공업		75	492	
현중사내하청	13	4		1
한국TRW	7	81	134	4
한국프랜지		45		
한라공조	4	10	11	8
한일이화		30	30	2
지부	4	10		5
삼성전자서비스				
개별	3			
총 원	38	311	678	33

2014. 9월

	9/2 울산과학대 파업 연대집회 (울산과학대)	9/4 현대차비지회 지원연대집회 (오일뱅크->현 대차정문)	9/16 울산과학대파 업승리결의대 회 (울산과학대)	9/19 세월호 촛불문화제 (롯데백화점)
고강알루미늄	3	4		
덕양산업				
현대메티아		4	4	4
세종공업	10			8
현중사내하청		5	4	
한국TRW	3			7
한국프랜지	3			
한라공조				
한일이화	3			
말레동현				
지부	2	5	1	5
삼성전자서비스				
개별	2			2
총 원	26	18	9	26

2014. 9월

	9/22 세월호 농성장 지지방문 (광화문)	9/26 현중사내하청 임단투 결의대회 (현중정문)	9/27 세월호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회 (서울시청)	9/29 금속울산 확대간부 등반대회 (무룡산)	9/30 울산과학대 파업승리결 의대회(울산 과학대)
고강알루미늄	1	6	4	12	조합원 간담회
덕양산업	1		2	30	
현대메티아	1	9	6	13	5
세종공업	1	7	7	30	7
현중사내하청		20			8
한국TRW	1	12	6	14	8
한국프랜지			1	9	3
한라공조	1		5	12	
한일이화	1		3	25	
말레동현	1				
지부	2	7	6	10	4
삼성전자서비 스					
개별		2			2
총 원	10	63	47	155	37

4. 임단투 사업보고

1) 중앙교섭 보고

금속산별협약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우선 적용】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산별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2 조 【사용자단체 가입】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제 3 조 【유일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산별협약준수조치】

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제 5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보장

제 6 조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

- ①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은 년 8시간을 보장한다.
- ② 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제1항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을 보장하되, 조합간부는 지회 임원 및 상집간부로 한다.

제 7 조 【대의원 활동시간】

조합 대의원(중앙.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제 8 조 【중앙위원 활동시간】

조합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

1. 조합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2. 조합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제 9 조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활동시간】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 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조합전임】

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조합 중앙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

제 12조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 13 조 【전임자의 처우】

-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제 14 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 15 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 까지 인도한다.

제 3 장 노동조건, 임금, 퇴직금

제 16 조 【노동시간】

-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 ① 회사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4년 3월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② 회사는 교대제 변경을 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로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 늦어지거나 당해 사업장의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13년 12월 말일까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부품사가 아닌 회사와 사업장 특성상 본조의 적용이 어렵다고 노사간 협의한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사자율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 ⑤ 조합과 사용자협회의는 교대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까지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8조 【금속산업 최저임금】<갱신>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296,170원과 통상시급 5,71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 19 조 【임금 ▣ 노동시간체계 개선】

- ①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

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④ 월급제 등 시행계획은 2015년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20 조 【통상임금】

- 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 ②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제 21 조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퇴직금 및 퇴직연금】

-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한다.
- ③ 회사와 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3 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회사와 조합은 경영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제 4장 건강권, 노동안전보건

제 24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 25 조 【산재은폐 방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제 26 조 【산업재해 예방】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방식과 작업환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월별 유급 재해예방활동은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미만 30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34시간으로 한다.
3.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산재신청을 하며,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제 27 조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

-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1.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이하 “발암물질”이라 함)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평가(조사)기관 등을 선정한다.
 2. 발암물질의 전문기관 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3.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하고 노사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한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조합과 사용자협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비용을 부담한다.
 2.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에 노출 된 작업복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샤워장, 탈의실, 세탁처리 방법은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발암물질 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발암물질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5. 위 발암물질 관련 합의 사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고 용 안 정

제 28 조 【해외공장】

- ①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②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 ③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29 조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제 30 조 【별도법인】

- ①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31 조 【분할, 합병, 분사】

회사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 32 조 【적정인원, 배치전환】

회사는 자연감소 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제 33 조 【산업공동화 대책】

- ①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제 34 조 【고용안정 등】

- 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제 35 조【신규채용】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 1.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2. 회사는 신규채용 시 제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일정비율로 채용한다.

제 36 조【정년】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②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제 6 장 비정규직 관련

제 37 조【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내하청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①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 39 조【임시직의 정규직화】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 40 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④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 ⑤ 회사는 간접생산공정(청소, 식당, 경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제 41 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제 42 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 ③ 회사는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제 43 조【명예감독관 위촉】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촉한 고충처리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

제 7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 44 조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회사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 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제 45 조 【우리 쌀 사용】

회사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제 46 조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 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7 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 8 장 금속노사공동위원회

제 48 조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 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한다.

1.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공동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임금체계 개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1.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6.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지원과 노사감시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9 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부 칙

제 1 조 【협약의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2 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중앙교섭에서 협의한다.

2014년 11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전규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 신쌍식

2) 지부교섭 보고

가.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지부 요구안
<p>1. 임금인상요구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 159,514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p>
<p>2. 통상임금 1) 회사는 정기상여금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2) 회사는 기존에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성과급 포함 변동 상여금 등으로 변형해서 지급하거나 고정급 및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p>
<p>3.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조 전임자의 인원, 임금, 처우 등에 관련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노사자율로 정한다.</p>
<p>4. 지부 활동 보장</p>
<p>5. 교육위원 활동보장 지회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금속노조 활동시간 중 교육위원 교육준비 및 활동시간에 대해 월6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단, 지부 교육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p>

나. 지부집단교섭 의견접근안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2014년 집단교섭 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울산지역 8개 사업장[한일이화(주), 세종공업(주), 덕양산업(주), 한국프랜지공업(주),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주), (주)고강알루미늄, (주)마이테크, (주)엔시스]은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집단교섭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아 래 -

<p>[임금 인상안]</p> <p>한일이화 : 81,600원, 세종공업 : 79,200원, 덕양산업 : 79,200원 한국프랜지공업 : 80,000원, 한국TRW : 80,000원, 고강알루미늄 : 60,000원 마이테크 : 60,000원</p>
<p>[통상임금]</p> <p>1.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별 노사간 합의로 결정한다. 2.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p>
<p>[노동조합 활동 보장]</p> <p>노조 전임자의 인원, 임금, 처우 등에 관련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한다.</p>
<p>[지부 활동보장]</p> <p>금속 사용자협의회가 현 지급하는 지부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별도 실무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p>
<p>[교육위원 활동보장]</p> <p>지회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금속노조 활동시간 중 교육위원 교육준비 및 활동 시간에 대해 월 6시간(연간 72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단, 지부 교육위원은 5명 이내로 한정한다.</p>

2014. 12 . 03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전 규 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울산지역교섭대표



다. 2013년 지부 집단교섭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수	투표자수	찬성	반대	재적대비 찬성율	투표대비 찬성율
2,105	1,776	1,580	187	75.05%	88.96%

보고

금속노조 8기 2년차 사업계획

1. 정세

가. 세계정세

1) 세계 경제 및 경제 : 장기불황국면 지속, 미국의 패권 약화

가) 경제

- 미국은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경기부양정책과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수치상으로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2014년 1.7% 성장전망, 실업률 5%대로 진입) 하지만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미국의 위상약화와 함께 실물경제회복 속도를 뛰어넘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또다른 거품을 양산하면서 제2의 금융위기로 부담 때문에 양적완화를 종료했으며 조만간 금리인상을 검토중이다.
- 유럽은 경제침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IMF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경제성장률 올해 0.8%, 내년 1.3%로 전망)
- 일본은 아베노믹스(양적완화 및 저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성장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2014년 1.6% 성장전망)
- 중국은 연착륙 하강국면에 있으며 과잉투자로 인한 구조적 부실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4년 7.4%성장전망)
- 신흥국 경제는 불안한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에 따른 달러캐리 트레이드로 인해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 시장이 과잉된 상태에 있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함께 조만간 예상되는 금리인상과 맞물려 급속하게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나) 정치

-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출발한 세계공황이 만성적 불황으로 전락하면서 유일한

타개책이었던 양적 완화는 미국 달러가치의 하락과 함께 미국의 위상을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또한 이라크전에서의 실패와 중동민중들의 반미감정 격화, 남미에서 반미 사회주의 정권의 집권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패권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동아시아 정세 : 긴장국면 지속

- 이라크전에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군사비지출로 인해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일본의 재무장화를 기본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여 대중봉쇄전략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화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한반도내에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긴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2014년 일본은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재무장)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해석을 변경한 후, 국방예산 증강에 박차를 가하며, 자위대가 전지구적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표방하며, 아시아 일대에 미국의 해군력을 집중시키면서 지역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아시아 일대의 미·일 군사력 증강과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 미국의 지역미사일방어망 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장비인 고고도미사일요격시스템(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미국주도의 동북아 지역미사일 방어망이 완성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는 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고조될 수 있으며, 미중러간 갈등 및 중일간 및 한중간 갈등 격화와 함께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와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정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공존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북적대정책이 해소되지 않고 남북간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안게임을 매개로 남북 대화가 모색되고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의 무력대응 등이 동시에 전개되고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긴장상태다. 분단70년을 맞는 2015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대결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5.1절 남북노동자통일촉구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3) 세계적 차원의 계급투쟁 : 신자유주의 및 미국의 패권에 반대하는 투쟁 지속

- 유럽경제의 악화는 복지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다시 노동자 투쟁이 발화될 가능성이 크다
-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 투쟁, 남미 사회주의 정권의 반미정책, 미국에 맞선 이라크 민중들의 투쟁등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나. 국내정세

1) 경제정세

- 세계경제의 만성적 불황에 따라 한국 경제역시 단기간에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올해 한국경제 성장전망 : 3.7%) 오히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및 금리인상과 맞물려 급속하게 외환이 유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잉성장되어왔던 자산시장의 거품이 폭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중국경제의 연착륙 하강과 아베노믹스로 표현되는 일본의 엔저정책이 계속되면서 제조업에서의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할 경우 실물경제의 불황과 결합되어 경제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 박근혜정권은 소위 최경환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통해 만성적 불황상태를 타개하려고 한다. 그 핵심은 첫째, 금리인하와 한국판 양적완화로 일컬어지는 경기부양자금의 방출이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자본에 대한 직간접지원의 의미가 있다. 둘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완화등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이는 서민들의 부채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인상등의 세수 확대 정책이다.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최경환노믹스는 재벌에 부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반면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이와함께 구조적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부실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2) 산업정세

가) 자동차산업

<주요 성장률 전망>

	2013	2014			2015		
		147월 (A)	1410월 (B)	조정폭 (B-A)	147월 (C)	1410월 (D)	조정폭 (D-C)
세계	3.3	3.4	3.3	△0.1	4.0	3.8	△0.2
선진국 (소비자물가)	1.4 (1.4)	1.8 (1.6)	1.8 (1.6)	0.0 (0.0)	2.4 (1.7)	2.3 (1.8)	△0.1 (0.0)
미국	2.2	1.7	2.2	0.5	3.0	3.1	0.0
유로존	△0.4	1.1	0.8	△0.3	1.5	1.3	△0.2
독일	0.5	1.9	1.4	△0.5	1.7	1.5	△0.2
프랑스	0.3	0.7	0.4	△0.4	1.4	1.0	△0.5
이탈리아	△1.9	0.3	△0.2	△0.5	1.1	0.8	△0.3
스페인	△1.2	1.2	1.3	0.1	1.6	1.7	0.1
일본	1.5	1.6	0.9	△0.7	1.1	0.8	△0.2
영국	1.7	3.2	3.2	0.0	2.7	2.7	0.0
캐나다	2.0	2.2	2.3	0.1	2.4	2.4	0.1
기타	2.3	2.9	2.9	0.0	3.3	3.1	△0.1
한국	2.8	3.7**	3.7	0.0	3.8**	4.0	0.2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	4.7 (5.9)	4.6 (5.4)	4.4 (5.5)	△0.1 (0.1)	5.2 (5.3)	5.0 (5.6)	△0.2 (0.3)
중국	7.7	7.4	7.4	0.0	7.1	7.1	0.0
인도	5.0	5.4	5.6	0.2	6.4	6.4	0.0
러시아	1.3	0.2	0.2	0.0	1.0	0.5	△0.5
브라질	2.5	1.3	0.3	△1.0	2.0	1.4	△0.6
남아공	1.9	1.7	1.4	△0.3	2.7	2.3	△0.4
아세안5*	5.2	4.6	4.7	0.1	5.6	5.4	△0.2

* 조정폭의 ('14.10월 전망치-'14.7월 전망치)와 상이한 것은 반올림 절차 등의 영향

** 아세안 국가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 '14.4월 기준(우리나라는 7월 업데이트에는 未포함)

◇ [자료:IMF]

- 현대 기아차의 경우 글로벌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해외공장 건설 및 가동률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의 국내생산 비중은 2011년 52.5%에서 2013년 45.2%까지 하락했고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 과 현대차 중국 4공장등의 완공

이 예상되는 2016년에는 현대차의 국내생산 비중은 더 하락할 것이다.

- 한국지엠의 경우 △지엠의 미국 소형차 라인업 완성 △지엠의 중국에서의 생산능력 제고 △지엠의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현지공장 생산능력 제고 △지엠의 스페인 공장 생산능력 제고등의 환경과 맞물려 한국공장 전망의 종속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생산-개발기지로서의 입지가 취약한 르노삼성은 그 전망이 더욱 불투명하다.
- 한-EU FTA 발표 3년만인 2014년 7월 1일부터 유럽산 1500cc초과 차량에 물린 관세가 철폐되었고 1500cc 이하는 2016년 7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와 맞물려 유럽산 자동차 수입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년차 12.5%, 2년차 26.6%, 3

년차 40.2%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1년차 12.5%, 2년차 26.6%, 3년차 40.2%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2010년 6.9%에서 2013년 13.6%로 두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 완성차 자본은 2014년 내내 HPV, 편성효율등의 지표를 악용해 한국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시비를 걸다시피하는 여론몰이 총공세를 펼쳤다. 이는 2015년에도 더 심화되 물량과의 연동성 및 자본의 현장통제력을 높이려는 방향의 임금체계 개악 추진이 이어질 것이다.
- 이에 조합은 생산물량에 기인한 임금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고정급 제고를 목표 전 조직적인 임금안정성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라는 산업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토론의 기초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나) 조선산업

- 일본의 부활 : 9월 한달간 국가별 선박 수주량에서 한국(약42만CGT)이 중국(약92만CGT), 일본(약55만CGT)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월별 신조선 수주실적에서 일본에 밀려 3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이다. 다만 9월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두 번째. 엔화약세에 따른 환율 수혜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조선업계는 중대형 벌커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종의 신규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엔저를 계기로 기술개발, 선박금융 확대 등 자국 조선업에 대해 대규모 지원 중이다. 그 지원범위와 규모를 계속 넓혀가고 있어 한국 정부가 즉각 조선산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체계적 지원에 나서지 않을 시에는 일본 조선업계가 장기적으로 한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특히 일본 조선사와 LNG선 등 경쟁 품목이 겹치는 국내 중형조선소들의 경우, 엔저의 강한 충격이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조선산업 전망 : 세계 조선업계 신조선 부문에서 보면 최근 벌커 비중이 크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본격화돼 2015년에는 셰일용 LNG선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가 하락으로 해양생산설비 발주 지연이 우려되고, 시추선 발주 역시 침체돼 있다. 전반적으로 상선 발주는 2014년 대비 하락, 선가 역시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소의 경우, 2013년 하반기 상승한 선가에서 받은 물량으로 2015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원화 절상으로 선가 상승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국내 조선소 수주잔량은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최근 대규모 신규 수주가 없는 상황이라 공격적 저가수주가 한국 조선소에서 부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다) 철강산업

- 국내제조업 부진에 따른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엔저효과로 가격경쟁력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 중국업체들의 생산능력이 향상되면서 국내에 중국산 저가제품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건설업 침체와 맞물려 철근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 결국 수요는 정체되어 있는데 과잉공급으로 귀결되어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포스코 단기 순익 전년대비 43% 급감) 기업간 경쟁격화와 함께 기업부실화로 이어지면서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정치정세

- 올해 지자체 선거에서부터 7.30재보궐 선거이후 역학관계를 커다란 흐름에서 판단한다면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약진했던 반면 보수 야당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세월호등의 참사가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지만 정치적인 대안세력으로 확고히 서지 못한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계속되었다. 마찬가지로 진보정치세력 역시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
- 세월호 참사이후 여야의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였지만 유족 및 국민대책위 중심의 투쟁을 통해 장외에서 정치쟁점화하는 것에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유족이 요구하였던 특별법의 관철로 이어지지 못했던 요인은 야권의 적당한 타협과 함께 전국민적인 투쟁으로 상승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 하반기에는 각종 세금에 대한 처리의 문제가 국회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민생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또한 세월호 투쟁 역시 일정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비록 특별법이 여야 및 유족간 합의로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특검과 조사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출하지 않는 한 전국민적인 비판과 투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다.
- 내년예 예상되는 정치 의제로 개헌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개헌론은 전국민적인 쟁점이기보다 여야 보수 정치권들의 이해관계속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을 뿐이다. 개헌론을 제외하고서라도 내년에 선거등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 투쟁을 포

함하여 노동법 개악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등 전국민적인 정치쟁점화는 오직 민중운동의 활성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적 정치일정과 함께 보수정치의 강화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

4) 노동정세

-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권과 야권 및 민중운동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대노동공세는 일정정도 약화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특별법에 대하여 여야가 기만적인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대노동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시간 연장 및 파견법 개악추진에서 드러나듯이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 개악 중심의 공세가 예상된다.
- 민주노조 진영에 대해서는 강력한 탄압으로 일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노총을 제도권내로 인입하여 기만적인 노사정 대타협 전술을 쓰는 양동작전이 예상된다.
-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직선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강력한 노동전선의 구축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공무원 연금개악, 공기업민영화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정부 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다. 주체정세와 과제

1) 8기 1년차를 경과하면서 산별노조로서 조합의 현재적 수준에 대한 진단에 입각하여 2년차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 8기 1년차에 박근혜퇴진투쟁을 핵심기조로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임단투를 결합해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투쟁의 결과 획득된 성과도 있지만 누적되고 있는 조직적 한계와 과제 또한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2) 박근혜 퇴진은 정세와 연동하여 2년차에도 주요한 투쟁기조로 가져가야 한다. 조기전선 구축으로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 개악을

저지하도록 한다.

- 박근혜 퇴진투쟁은 크게 두가지의 측면에서 내용성을 채워가야 한다. 첫째, 정권은 임기 3년차를 맞이하면서 파견법 개악이나 노동시간연장법등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을 개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퇴진이라는 총괄기조속에서 조기전선을 구축하여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통해 저지해내야 한다. 둘째, 세월호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여야 및 유족의 합의에 의해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이후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등 법제도개선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8기 1년차 박근혜 퇴진투쟁이 제기했던 과제를 되돌아보며 힘있는 전선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즉 정치투쟁을 수행면서 드러났던 조합의 지도 집행력 문제, 대중정치의식이 취약한 문제, 정치파업 결정구조에 대한 문제, 대의원중심의 중간허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내 과제를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

3)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간접고용 철폐투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내야 한다.

- 현대,기아차 집단적 불법파견 판결을 계기로 불파투쟁을 간접고용 철폐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함께 자동차만이 아니라 철강,조선등 다른 제조업사업장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편 정부와 자본은 불법파견 판결을 피해가기 위해 현재의 파견법을 무력화하고 대다수 업종에서 합법도급을 정당화하는 악법을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전조직적 역량을 투입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저지해야 한다.

4) 통상임금과 맞물려 자행되고 있는 자본의 임금체계개악 기도를 분쇄하고 완전월급제 쟁취로 나가야 한다.

- 2014년 임단협 투쟁을 거치면서 현장혼란이 어느때보다 심하다. 통상임금 의제가 사업장별로 △근무형태 변경 △물량-고용의 변화 △외주확대 가능성 △납품 이원

화 및 다단계 하청 가능성과 맞물려 2015년을 앞둔 8기 2년차에 현장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틈새에서 자본은 임금피크제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등 임금체계를 개악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종합분석 및 대응력 확보로 조합의 내용적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

5) 조직강화특위 사업을 통해 제출된 조직강화 및 혁신에 대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35차 임대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36차 정대에서 조직강화특위구성이 결의되어 조직강화방안을 제출하면서 각급 의결단위 및 현장토론이 진행되었다.
- 토론결과 기업지부는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업지부의 유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면서도 지역공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역사업의 강화를 통해 지역지부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앙교섭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중앙교섭과 병행할 수 있는 완성차 교섭의 모색을 통해 큰틀에서 산별중앙교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 8기 1년차를 경과하면서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한계와 과제가 드러났다. 의결과 집행이 일치되지 못하면서 조직내 신뢰도가 높지 않다. 확대간부 동원중심의 집회문화 역시 간부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반면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대상화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대의원들은 1년에 두차례정도 진행되는 정대와 임대에 동원되고 있을 뿐 적절한 현장토론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총체적 문제점을 8기 2년차 조직운영과정에서 단계적 개선방안을 통해 극복해가야 한다.

6) 금속산별의 강화와 함께 제조산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 제조산별의 토대를 구축하기위한 기반은 취약하다. 하지만 대단결이라는 원칙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금속노조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전기전자,기계등의 업종에 대한 중장기적 조직화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유관 산별노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에 기초하여 연대와 통합에 대한 단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7) 복수노조, 투쟁사업장에 대한 돌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유성기업등 노조파괴사업장, 쌍용차등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가 8기 2년차에도 주요한 해결과제로 부각되어있다. 투쟁사업장에 대하여 밀착된 일상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상징성있는 사업장을 설정 집중투쟁을 통해 돌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8기 2년차 사업과제

가. 투쟁과제

-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 임금체계개악저지, 완전월급제 쟁취
- 복수노조, 투쟁사업장, 구조조정사업장 대응강화

나. 조직과제

- 조직혁신과 확대를 통한 제조산별노조 토대마련

다. 교섭과제

- 산별교섭 강화

3. 세부사업계획

가.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1) 기초와 방향

가)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신자유주의 확대에 맞서 노동기본권 사수를 목표로 조기전선을 구축한다.

- 정세를 보았을 때 내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악안 국회 통과 저지를 목표로 조기에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한다.
- 원청사용자성 확대,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 손배가압류, 정리해고,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산별교섭 법제화, 타임오프 등 법개정 의제를 공세적으로 쟁점화한다.
- 간접고용 철폐 투쟁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분쇄라는 목표하에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의 일환으로 조직하되 집단적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조직확대 사업과 결합한다.

나) 박근혜 퇴진 기초하에 세월호 투쟁등 제반 민중 투쟁과 결합한다.

- 현시기에 세월호투쟁은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성을 집약적으로 폭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층민중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 세월호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생존투쟁과 연대하면서 박근혜 퇴진투쟁으로 확대해 나간다.

다) 사회공공성 강화투쟁과 결합하여 총노동투쟁의 확대발전에 복무해나간다.

-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신자유주의 전면확대 정책은 노동법 개악과 함께 또한편에서 민영화확대 및 사회복지 축소로 나아가고 있다.
- 공무원 연금 개악을 비롯하여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공공 부문 노동자 투쟁과 연대를 강화하여 총노동전선의 확대 강화에 복무해나간다.

2) 투쟁의제

가) 노동법 개악 저지

- 노동시간연장 : 주 52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연장기도
- 휴일근로 가산임금 삭제 : 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근로시간 특례업종’제도 유지 : 노사서면 합의시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허용
- 통상임금축소 : 대통령령으로 통상임금 관련 예외규정을 통해 제외대상 확대하고자 함
-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 유지 : ‘경영상의 이유’라는 실체적 요건 유지 및 완화
- 사내하도급법 도입 : 현행 파견법조차 무력화하면서 사내하청의 전면 합법화

나) 노동법 개정

-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 인정
-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 창구단일화 폐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보장
-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단축
- 정리해고 제한
-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추진

다) 사회공공성

- 의료, 교육, 가스 민영화저지
- 공적 연금 개악저지
-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금지
- 유해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 기업살인법 제정 : 산재사망 처벌강화 및 원청사용자 책임성 강화

3) 투쟁계획

가) 투쟁준비기(정대 - 임대까지)

(1) 투쟁조직화

① 조직적 결의와 태세구축

-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 결의를 통해 투쟁을 준비해나간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입법발의한 개악안에 대한 공유와 함께 결의문등에 투쟁결의를 함축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에 따라 준비되는 각급회의와 수련회에서의 간부결의를 통해 전조직적 긴장과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간다.
- 사업장별 불법파견 노동자를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총력투쟁 세부적 전술까지 결의한다
- 2월 임시국회에서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조기에 소집하여 투쟁을 결의한다.

② 의제별 쟁점화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시간단축-통상임금 입법청원에 이어지는 쟁점화 사업과 함께 손배가압류, 정리해고에 대한 기획사업, 노동법개정에 대한 조합원 선전, 교육을 통해 현장쟁점화해나간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대중적 폭로와 여론화 및 대정부 압박투쟁을 강화하여 개악안 국회상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공적연금 축소의 문제를 노동법 개정과 연동하여 쟁점화한다.

③ 총노동전선구축

- 민주노총에 유관 산별노조, 제사회단체와 함께 노동법 개악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기구 구성을 제안하여 실질적인 총노동전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 공무원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연금개악 저지, 민영화저지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간다.
- 현대,기아등 불법파견 판결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정규단위 결집과 함께 비정규직

의 집단조직화의 계기로 이어나가도록 한다.

- 세월호투쟁등 제반 민중생존투쟁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간다.

(2) 세부사업

1) 조합

① 노동법 개악저지 및 개정쟁취 대책팀 구성(정대 직후)

- 임원 관장하에 유관실로 구성
- 국회 상황을 중심으로 정치권 동향 수시로 파악
- 민주노총과 긴밀한 소통체계 강화
- 중단기적 대응기조와 방향수립

② 정책교육선전사업

- 정책자료집 제작 및 교안 마련
- 조합 기관지등을 통한 선전홍보사업

③ 연대 사업

민주노총에 공동 투쟁기구 구성 제안
노동투쟁 및 민중연대투쟁에 적극 연대

④ 기획 쟁점화사업

- 손배가압류 및 정리해고

2) 지부,지회

- 사업장별 조합원 의무교육 배치
- 각종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한 대의원 조직화
- 사업장별 불법파견 노동자 금지사업전개
- 사업장별 출퇴근 및 중식선전전 전개
- 지부별 새누리당 타격투쟁 전개

3) 총력투쟁시기(임대 - 4월 임시국회)

① 총력 투쟁 조직

- 임대 직후 중집을 투본으로 전환하여 조기투쟁전선을 가시화한다.
- 지부,지회별 임대에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 총력투쟁 세부전술은 투본에 위임한다.

② 3대의제 쟁점화

- 사업장별, 지역별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법 개악기도를 무력화하고 법개정의를 공세적으로 쟁점화한다
- 민주노총 및 정치권을 망라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3대 의제를 사회쟁점화한다.
- 사내하도급법 문제를 사회쟁점화하기 위하여 비정규 결의대회 포함 노동부압박투쟁 등 대정부투쟁을 강화한다.
- 진보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대국회대응을 강화한다.

③ 총노동전선 구축을 통한 총력투쟁 전개

- 민주노총 및 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앞 농성포함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④ 세부투쟁계획은 임대에서 제출한다.

나. 임금체계개악저지, 완전월급제 쟁취

1) 기초와 방향

- 통상임금 의제가 주요쟁점이었던 2014년 임단협은 월급제 및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과제를 제기, 조합은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에 대한 다양한 정책사업과 현장투쟁을 시급히 벌여야 한다.
- 이후 자본과 정권은 직무급 도입, 임금피크제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등의 공세를 본격화할 것이므로 조합은 선언적 저지수준을 넘어 교대제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내용적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조합은 생산물량에 기인한 임금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고정급 제고를 목표로 전조직적인 임금안정성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2) 세부사업계획 (2015년 3월 이후부터는 임대때 제출)

가) 사업체계 구성

- 조합차원의 임금체계개편 대응팀 구성(2014.11)

나) 현장주체 참여 연구사업과 현장공론화

- ① 조합-울산-현대차지부 공동주관 자동차월급제 모델 연구사업의 전조직적 확대 (2015년 1월까지)
- ② 자동차 월급제모델 연구사업 지역 및 권역별 순회 공청회 및 교육수련회 개최 (2015년, 1월까지)
- ③ 자동차 월급제모델 연구결과의 현장 교육선전강화(2015년 1월 - 3월까지)
- ④ 사업장단위 월급제-근무형태변경 의제 노사협약에 정책적 지원 강화(2015년 3월까지)
- ⑤ 조선 및 철강업종등 비자동차업종 월급제모델의 현장참여 연구토대 구축(2015년 3월까지)

다) 사회쟁점화 사업

- ① 각종 통상임금 사업장단위 소송결과 관련 사회쟁점화 강화(8기 2년차)
- ② 월급제-근무형태변경 의제 노사협약의 쟁점화 사업장단위 중심 집중투쟁 배치(2015년 1월 - 3월)
- ③ 고용노동부, 자동차 산업협회,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등과의 대토론회 추진(2015년 2월까지)
- ④ 언론기획사업강화(8기 2년차)

라) 연대사업 토대구축

- ① 민주노총 가맹조직 제조업단위 임금체계개편 쟁점화 공동논의를 마련추진(2015년 2월까지)

② 친노동 임금정책 외부전문가(학자포함) 네트워크 토대추진(2015년 2월까지)

마) 2015년 임단협 요구안 및 투쟁방침 수립

- ① 조합 단협위원회 가동(2014년 12월부터)
- ② 현장토론강화(2015.2)
- ③ 조합 중집위와 중앙위 거쳐 임시대대(2015년 2월말)
- ④ 세부 2015년 임단협 요구안 및 투쟁방침은 임시대대때 제출

바) 현대차 통상임금소송 1심판결과 연동하여 조기에 투쟁배치 검토

다. 복수노조, 투쟁사업장, 구조조정사업장 대응강화

1) 기초와 방향

가) 투쟁 사업장 집중돌파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① 복수노조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노조 대책팀회의, 투쟁사업장 회의등을 통해 사업장단위를 넘어 금속노조차원의 집중성을 갖는 공동투쟁과 사회쟁점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 ② 하지만 이들 사업장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기적 투쟁사업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③ 이들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징성과 함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투쟁전개를 통한 돌파와 함께 유사사업장으로 전파하는 방식, 이를 위한 입체적 사업 구상을 제출해야 한다.

나)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사전대응 조직

- ① 내년 장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부실화와 함께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농후하다.
- ②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징후가 포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합관장하에 해당지부 포함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한다.

2) 세부사업

① 복수노조, 투쟁사업장 투쟁

- 복수노조대책팀, 투쟁사업장 회의를 통해 투쟁사업장 총체적 진단 및 분석사업 전개
- 집중투쟁사업장 선정 및 세부투쟁계획안 마련
- 여론화 및 쟁점화 중심 기획사업전개
- 집중투쟁 전개 : 조합은 집중지원체계구축을 통한 지원사업
- 중장기 대응을 위한 종합메뉴얼 구성 및 현장유통사업

② 구조조정 사업장 투쟁

- 구조조정 대응팀 구성(담당임원 + 유관실 + 해당 지부, 지회)
- 대응방안 수립 : 장단기적 대응방안 수립, 종합메뉴얼 구성사업

라. 조직혁신과 확대를 통한 제조산별노조 토대마련

1) 기초와 방향

가) 대단결의 기초하에 제조산별의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① 제조산별로 조직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이와 차별을 넘어 대단결을 통해 자본에 맞서기 위해서이다. 금속노조가 출범한지 15년여, 15만 산별노조로 전환한지 8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차이와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지부의 유지 해소논쟁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드러나듯이 조직적 일치성에 입각한 단결력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조직내 의결과 집행이 일치되지 않고 기업별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관성적 조직운영속에서 조직내에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상황이다.

② 이런 상황에서 제조산별의 방향성을 제출하는 것은 단지 양적 확대를 통한 제조산별노조를 의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내부에 관성화되어있는 문화와 투쟁, 조직운영의 관성을 타파하는 혁신을 통해 내부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미조직 비

정규사업장 조직확대 및 유관 산별노조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 계획을 통해 제조산별로의 전망을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나) 조직혁신은 현장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의결과 집행을 분명히 하는 과정을 통해 각급단위간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뢰의 회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① 15만으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투쟁이 갖는 영향력과 폭발력이 배가된 측면이 있지만 금속노조 초창기의 기풍은 약화된 채 대의원대회를 포함하여 주요의결단위의 결정이 집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② 조직내적으로도 아래로부터 토론에 의한 강력한 대중투쟁력이 형성되지 못한채 위로부터의 지침에 의한 확대간부 위주의 집회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성에 의한 사업작풍,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 ③ 각급단위 의결을 분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함께 아래로부터 현장토론을 활성화하는 방안마련 또한 위아래를 소통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조직확대와 관련하여 조합-지부-지회를 계통적으로 강화한다는 장기적 목표속에서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미조직 비정규사업의 확대 강화 방안 그리고 조선업종 및 유관산별노조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① 지역사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으로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단기적 사업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에서 인력배치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과 함께 기업지부와 지역 공동사업을 매개로 단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함께 규약상에 명시되어있는 대구,경북권 통합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
- ② 현대,기아차 불파소송 승리, 삼성전자서비스 조직화를 계기로 삼성을 포함한 대재벌사 미조직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한 방향수립과 함께 1년차에 집중하였던 공단조직화등의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8기 1년차에 미조직위원회와 비정규위원회로 분리하였던 시스템을 안정적 회의체계로 구축하면서 미비사업을 계통화해야 한다.
- ③ 제조산별노조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내부를 혁신하는 사업과 조직강화사업 그리고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확대사업외에 금속노조에 포

함되지 않은채 독자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업종 미전환사업장등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제조업이라는 공통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직 경로를 달리해왔던 화섬노조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에 입각하여 연대사업 강화 및 단계적 통합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2) 세부사업 계획

가) 조직혁신사업 계획

① 의결과 집행의 일치성 확보

- 각급단위에서 사업기획-집행-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선순환구조를 책임있게 실행

② 기업별 울타리를 넘어 사회연대 전략 구체화

- 생활임금 확보라는 차원에서 산별최저임금 요구안 설계와 전조직적 투쟁방안 마련
- 사업장 단협효력 확장 의제화

③ 대의원 현장토론 및 현장사업 강화

- 지부단위의 정기적 회합과 토론정례화, 기업지부의 경우 공장별 모임 정례화
- 모범적인 현장 사업 발굴과 함께 전파를 통한 사업화

④ 임원 현장순회 강화

- 정기 현장순회 : 대의원 간담회 배치를 통한 간부들과 소통강화
- 투쟁 조직화 현장순회 : 완성차 현장 순회 집중
- 투쟁사업장, 중소기업사업장 현장순회 강화

⑤ 제조산별에 대한 증장기전망확보

- 노동연구원 중심 제조산별건설 연구 프로젝트 진행
- 교육연수원 건립을 통한 장기적 토대 구축 : 건립팀구성
- 정책자문위원 운영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 민주노총과 제조산별 조정회의 구성 : 제조산별에 대한 전망토론

나) 지역(공동)사업 활성화 계획

① 지역공동위 활성화 방안 구체화

- 지역공동위 회의 정례화

- 지역 공동사업비 사용기준의 경직성 탈피
- 사무처 순환근무는 관료화 방지를 넘어 지역지부 활성화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규정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
- ②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공동사업 강화
 - 지역의제 개발과 사회정치사업을 통한 지역개입력 강화
 - 미조직 공단 조직화 사업계획 공동으로 추진
 - 사회공공성 강화를 주요의제로 연금개약 및 공기업 민영화등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 생활(임금)조례제정 사업등 전개
- ③ 퇴직자 조직화를 지역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
 - 외국사례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사업 진행
 - 토론회 및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수렴
 - 규약규정 보완

다) 미조직 비정규 사업강화를 통한 조직확대계획

- ①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을 위한 조직내 사업정비
 - 미조직 비정규 기금조성 사업전개
 -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위한 재정정비
- ② 자동차, 철강, 조선 비정규 조직
 - 자동차 : 납품지도 파약을 통해 조직계획 마련, 간접고용 사내하청 철폐 투쟁전개
 - 철강 : 임단협 체결을 통한 조직안정 및 간접고용, 사내하청 철폐투쟁 토대 조성
 - 조선 :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회의체 구성을 통한 조직확대계획 마련
- ③ 재벌 그룹사 조직화
 - 공단조직화와 맞물려 추진
 - 전략지역 선정을 통한 집중조직사업
- ④ 공단 조직화
 - 지역사업단 구축 토대마련
 - 사업전형을 통한 공단 조직사업 추진

라) 조선업종 및 유관 산별노조 조직화계획

① 조선업종 조직화

- 조선업종노조 연대회의(가칭) 구성 : 조선분과 주요사업으로 추진(2014년 말까지 사업계획으로 구체화)
- 금속노조 미전환사업장 및 조선분과 참관사업장 간담회 추진(2014년 연말까지) : 연대회의의 대략적 체계와 사업방향 논의
- 연대회의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계획 수립(2015년 2월중)
- 연대회의 차원의 대정부, 대자본 교섭 검토
- 조선업종 비정규 노동자 집중 조직화
- 월하청 연대 강화 : 비정규 대표자 조선분과 또는 연대회의 참여 적극검토

② 전기전자, 기계 등의 업종에 대한 조직화 방안 모색

- 조합에 담당자를 선임하여 조사사업 진행

③ 유관산별노조 연대강화

- 화섬노조와 정례적 간담회 진행 : 정책단 간담회 및 임원간담회 추진
- 연대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확장을 위한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
- 민주노총과 산별 조정회의 구성

마. 산별교섭강화

※ 단협위원회 및 중앙교섭 사업장 수련회등을 통해 임대까지 산별교섭강화 방안 제출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8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상 정 안 건

- 안건 1호. 8기 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 안건 2호. 8기 2년차 사업계획 확정건
- 안건 3호. 8기 2년차 사업예산 확정 건
- 안건 4호. 금속노조 8기 2년차 중앙위원 선출 건
- 안건 5호.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 안건 6호. 기타안건
- 안건 7호. 결의문 채택 건

의결주문

- ① 제출된 ‘8기1년차 사업평가(안)’ 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제출된 ‘8기1년차 결산감사’ 보고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기 1년차 사업 총괄 평가안

1. 사업기조

- 학습하며 투쟁하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 현장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제2의 정치세력화.
- 공단 조직화 사업 및 조선산업 조직화를 위한 현실적인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진행.
- 현장 조합원을 노동조합의 주체로 세우는 현장조직력 강화.
-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노동자 자주통일사업.
- 지역공동운영위를 통한 지역지부, 기업지부의 일치성을 높여 금속노조 강화.
- 반 박근혜 전선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사업 강화.

2. 사업방향과 목표

- 교육사업의 혁신으로 지회 간부, 조합원 교육 강화
- 주체적인 참여로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 현실화
- 조합원 중심의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노동자 자주통일사업
- 현장조직력 강화 및 조합원, 가족 문화사업
- 지역공동위원회의 안착화
- 지역 연대사업 확대 강화

3. 세부사업계획

- 1) 교육사업 혁신으로 지회 간부, 조합원 교육강화
 - 체계적이고 창의성 있는 간부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 간부, 조합원 교육의 일상화

2) 노동자 정치사업 강화

- 2014년 지자체 선거에 주체적 참여로 현장 주체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화
- 지회 일상 정치 활동 지원
- 현장의 요구에 의한 노동의제 및 지역의제 발굴
- 노동자 정치아카데미 등 교육사업 활성화

3) 미조직 사업 본격화

- 공단 전략 조직화 사업
- 조선업종 비정규직 사업
-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울산분회 강화 및 조직 확대
- 삼성계열사 노동조합 건설 토대 구축

4) 노동자 자주통일사업 강화

- 조합원 중심의 일상적, 대중적 노동자 자주통일사업 전개를 위한 통일실천단 구성
- 정권의 종북공세에 대한 대응투쟁
- 조합원 통일기행
- 지역 유관단체와 연대사업 강화

5) 지역공동운영위 안착화

- 지역공동운영위 정례화 및 안정화
- 전략공동사업 선정 및 집행
- 공동 부서회의 및 공동 위원회 회의
- 지역 의제 발굴 및 공동 투쟁

6) 현장 조직력 강화 및 조합원 문화사업

- 결의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한 실천력 담보를 통한 집행력 강화
- 다양한 방식의 현장순회 및 현장의견수렴
- 현장 보고대회의 일상화를 위한 기초 마련
- 조합원, 가족 문화 기행, 체험학습 마련

7) 지역 연대사업 강화

- 반 박근혜 전선구축을 위한 지역 연대체 확대 및 공동사업 강화.
-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소통, 협력관계 강화
- 현실적인 소외계층 지원 사업 방안 마련과 실행

4. 8기 1년차 총평

8기 전체를 관통하는 사업기조 중에서 중심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학습하며 투쟁하는 금속노조 울산지부’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부는 7기 때 교육사업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롭고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흐름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6개월에 걸친 각 지회 상집교육과 대의원 교육을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조합원 의무교육과 교섭위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실천이 결합된 교육사업을 기획, 진행하면서 시기별, 정세별 맞춤형 교육과 실천(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의료민영화 반대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울산지부 자체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역량 강화에 새로운 기본축을 마련하는 8기 1년차 였다.

다만, 다각도의 교육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나 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투쟁과의 결합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아직도 교육은 교육이고 실천과는 별개의 문제로 되는 지점이 이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현장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제2의 정치세력화 사업은 6.4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통합과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각급 회의를 통한 금속노조울산지부 노동자 후보를 선정하여 금속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지역의제화(공약화) 하기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울산지부 정치실천단을 중심으로 한 실천투쟁이 진행되었다.

울산지부 자체의 계획과 내용으로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통합적 지휘력이 부재한 문제와 실천적인 활동에서의 소극화는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선거시기에만 집중되는 현장정치활동 방식과 조합원들의 생활과 투쟁속에서의 일상적인 정치활동(노동생활 의제의 개발 등)의 부재, 생활 어느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특히 노동자들의 생활과는 뿔래야 뿔 수 없는 것이 정치임에도 교육과 실천이 결합되지 않는 문제 등이 과제로 남는다.

지난 6년간의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극명하게 보여준 정치와 생활의 문제를 이제는 대중적으로 인식시키고 울산지부 조합원 자체의 요구에 의한 현장정치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조직 조직화 사업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조직 대상을 넓혀서 진행하는 사업과 임단협체결을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울산분회는 1년이 넘게 투쟁해온 임단협을 성과적으로 마무리 하고 내부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제가 남아있다.

SLT 사업에서와 같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말레동현 지회 설립, 삼성SDI 울산지회 설립등으로 미조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다.

말레동현지회는 이번 임단협을 토대로 조합원과 지회가 튼튼히 서서 2015년 투쟁을 내실있게 준비하는 과제가 있고, 삼성SDI울산지회는 현재 진행되는 임단협 협상과 조합원 확대를 통한 조직력 강화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후 공단조직화 사업뿐만 아니라 미조직 사업의 역점은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 사업과 연동한 울산지역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조직화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통일 투쟁은 4.3 제주항쟁 기행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대중적 교육과 특색있는 기행 프로그램으로 각 지회별 노동자 통일사업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고 일정정도 성과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속적인 연계사업과 현장실정에 맞는 대중적 통일사업의 후속 기획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연속 집권으로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고 있고 종북몰이로 국민을 겁박하는 조건에서도 대중적인 8.15 노동자 자주통일대회와 범국민 자주통일대회의 성사를 위한 통일선봉대의 복원과 규모 있는 참가를 통해 노동자 통일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후 과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고 역사왜곡과 망언을 일삼는 일본에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으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 운동,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어낼 다양한 기행사업과 기획사업으로 대중적 단체인 노동자 겨레하나를 광

범위하면서도 내실있게 준비하는 문제, 광복70주년을 맞아 남, 북, 해외 전 민족이 함께하는 2015년 범민족대회 성사, 2015년 남북 민간 자주교류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중심이 되는 5.1절 남북노동자 통일 축구대회의 성사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중적 사업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운영위 사업은 7기 2년차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양지부의 실천과 교류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고 양 지부간 실무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통상임금을 비롯한 임단협의 준비부터 진행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속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의미있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주되게 진행된 사업은 교육사업으로 동학혁명 100주년을 맞아 조합원 동학역사기행, 60만번의 트라이 영화상영, 노안사업으로 조선사업장 산재은폐 실태조사, 특히 정책사업은 8기 전 기간을 통해 진행되는 각 사업장 경영분석을 통한 설명회 진행, 근무형태와 연관된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월급제 공동연구는 주요한 정책사업으로 양지부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사업진행 이였다.

양 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 등 양 지부 단결력을 강화하는 사업의 진행이 되지 못했던 점은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이후 지역공동운영위 사업은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 하고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여 양 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로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운영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

지역연대 투쟁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보당 탄압반대 대책위, 민주노총 침탈 규탄 투쟁, 민영화 반대, 전교조 지키기, 세월호 범국민대책위, 학비, 흙플, 과학대 등 지역 투쟁사업장 연대투쟁 등을 진행해 왔다.

이면박 박근혜정권 6년동안 어느 부문, 어느 계층도 투쟁하지 않는 단위가 없었다. 국민과의 불통을 기본으로 유신시대로의 회귀, 신 유신시대를 만들어가는 정권과 자본에 대항한 투쟁은 한시도 멈춘적이 없었다.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없으나 억압이 있는 곳에 반드시 투쟁이 있고, 투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망이 살아 있음을 온 몸으로 확인한 시기였다.

어려울수록 단결하고 연대해야 내일을 열어 나갈 수 있고, 차가운 겨울 바람을 뚫고 일어서는 강철같은 새싹이 있음으로 봄이 온다는 것을 실천으로 확인하였다.

지치지 않고, 잊지 않고 강철의 금속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 요구된다.

8기 들어서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소외계층 지원 사업 기금을 통해 지역 소외 계층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역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하 '기금')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와 울산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이에 지난 7기 2년차에 진행하고자 했던 소외계층 지원 기금 사용을 8기 1년차에 진행하고자 준비하여 집행하였다.

울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으로 추진하였다.

2014년 1월 17일(금) 기금 전달식을 통해 '한 부모 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한 부모 가정 장학기금'으로 30가구 월 10만원, 1년 한정으로 지원(2014년 1월 ~ 12월까지, 합계 36,000,000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알려짐으로써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사회적 인지도 개선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향후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부집단교섭은 8-1기에는 핵심의제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고,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 전체 공동요구로 내걸고, 중앙에서 크게 전선을 치고 지부와 지회의 투쟁과 교섭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지부와 지회에서 교섭과 투쟁을 통해 성과 있게 마무리 하는 것을 전체 금속노조의 중요한 의제로 상정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관련해 15만 전체의 공동투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지역별, 업종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체 공동전선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통상임금을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투쟁이었다.

따라서 전체 지회의 교섭과 투쟁이 예년에 비해 상당기간 길어졌으며 일부지회에서는 우여곡절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국적인 투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겠거니와 지역차원에서 울산지부의 공동투쟁과 각 지회별 교섭과 투쟁의 유기적인 결합을 힘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각 부서, 위원회 사업평가 안

[조직부]

1. 사업계획

- 1)조직쟁의담당자회의 내실화
- 2)울산지역공동위원회 안정화
- 3)문선대 <강철> 확대강화
- 4)지부조직강화사업
- 5)현장조직력 강화사업
- 6)지역연대사업 강화

2. 주요사업평가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의 정례화, 내실화

- 조직쟁의담당자회의 8회, 수련회 1회 실시
- 월1회 조직부회의 진행
- 선동교육 1회 실시
- 초청강연 2회 실시 (한국노동운동사, 노동정세)
- 7기에 이어 안정적으로 회의를 정례화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다

2) 울산지역공동위원회 조직부사업 미실시

- 현대차지부와와의 2014 공동투쟁을 성사하지 못하면서 계획된 지부간 확산 교류와 단결사업이 미실시 되었다.

3) 문선대 <강철> 사업 미실시

- 교대제, 임단투, 통상임금투쟁의 장기화, 구조조정사업장, 신규지회설립등 노동자

문화패 활동 조직에 어려움 미실시

-2014 임단투시기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로 보완

-2014 지회파업시기 세종공업, 한국TRW, 현대메티아 조직부차원의 노래교육 및 선동 지원

4) 지부조직 강화 사업

-삼성SDI지회,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신규지회 설립

-삼성전자써비스지회 울산분회 단협체결 안정화

-SLT지회는 설립후 사측책동으로 해산

5) 현장조직력 강화사업

-2014 임단투승리! 세월호특별법 제정! 금속울산 확대간부 등반대회를 실시하여 단결력을 강화하였다.

-일상적인 현장순회 및 지회순회로 지부-지회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6) 지역 연대사업 강화

-세월호 울산대책위원회 - 세월호특별법 재정을 위한 촛불문화제 결합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보당 탄압반대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침탈 규탄투쟁, 민영화반대투쟁, 전교조지키기(학교별 1인시위), 민주노총 울산공투본의 학교비정규직 연대투쟁, 울산과학대투쟁에 적극 결합하였다.

-노동관련 연극 <뭐할라꼬 올라갔노?> , 극단 <반도체소녀> 공연관람을 지원하였다.

3. 총괄 평가

7기에 이어 금속울산 조직부는 비상근의 어려운 처지에도 회의를 정례화, 내실화하는 등 성과있게 진행되었다. 단, 문선대 사업과 현대차지부와의 공동투쟁의 성사는 풀어야할 과제이다.

[교육선전부]

1. 사업 목표

- 간부역량 강화로 투쟁력 강화!
- 조합원 교육 체계화로 지회 조직력 강화!
- 교육선전 유기적 사업으로 지부 소통력 강화!

2. 주요사업 평가

1) 전 간부 교육

○ 각 지회 상집교육, 대의원교육

- 6개월 프로그램 / 한달 1~2회 진행
-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일관성있게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 준비.
- > 지회 상집교육 프로그램을 전지회 동시 진행하되, 각 단위의 맞게 진행하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의 심화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오고 실현해가는 민중의 역사를 심히 훼손하고 있음에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역사에 국한 되게 진행되었던 점과 임단투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중간에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안정적인 교육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교섭위원 교육

- 교섭기간 중점 교육
- 교육과 실천투쟁을 병행
- > 시기별, 정세별 교육이 진행됨
- > 세월호 정국으로 진상규명 실천투쟁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단, 임단투 시기 각 사별 상황이 다름으로 전체적인 교육이 중단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2) 조합원 의무교육

○ 전 지회 분기별 진행

○ 정세와 투쟁방침을 기본으로 진행

-> 지부 임원들이 직접 정세교육 및 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이 여전히 단협설명에 국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3) 교육선전 담당자 교육

○ 정기 회의시 역량 강화 교육 병행

○ 지회 선전 담당자 실무 교육

-> 정기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교육이 중단되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선전실무교육 등을 진행하며 다른형태 교육진행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교육선전 활동가 수련회

○ 상하반기 1회씩 진행

-> 지부 자체 수련회 진행

3. 선전사업 세부내용

1) 소식지

○ 지부소식지, 대자보, 속보 발행

- 일상적인 교육 대자보 발행

-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따른 대자보 발행

- 투쟁속보, 교섭속보 포함

- > 시기별 선전이 적정히 진행됨

- > 지부 소식지 내용에 좀더 다양한 기획시리즈가 필요함

2) SNS 및 홈페이지

○ 각 지회 교육선전부장 SNS 및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세와 투쟁속보 공유

-> sns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내지 못함, 이후 금속울산지부 SNS체계 구축을 적극 고민해야함

4. 교육위원회

○ 월 2회내 회의 및 교육 전개

○ 별도 운영 체계 구축

-> 8기 1년차 교육위원회의 활동은 안정화 되었다

-> 역사교육 준비를 위해 1년간 노동역사 토론, 근현대사 토론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교육위원 역량 강화 및 이후 사업 진행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신생지회, 초임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3. 총평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8기 1년차의 사업목표와 내용은 적중했다. 다만 이를 이반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부족했다. 간부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현시기, 8기 1년차의 과제를 2년차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통계부 및 교대제 위원회]

1. 사업목표

- 주간연속 2교대제 정착지원 및 8+8 직도입 방안 마련
- 주간연속 2교대제 8+8 직도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월급제 도입방안
- 통상임금 집단소송 지원
- 교대제위원회 및 조통담당자 집행체계 구축으로 지부의 정책조사역량강화
- 지부 산하 사업장 경영분석 및 일상적 경영감시 체계 구축
- 지부, 지회의 총무, 재정업무의 통일된 기준 정비 및 교육
- 지회 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부감사위원회 사업지원

2. 사업평가

조사통계부는 2013년 3월 현대자동차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2016년 8+8직 도입 및 월급제 도입방안 합의에 따라, 교대제위원회 사업을 중심으로 2013년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주간연속 2교대제도입 정착지원 및 미 전환 사업장의 도입지원, 자동차 원.하청 공동경영을 통한 원.하청 불공정 거래 대책수립 및 월급제 도입 방안을 위한 모델을 만드는 사업을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앞두고 부족한 생계비 보충과 대법원판결에 따른 미적용 통상수당의 정산을 위한 조합원 집단소송을 지원 사업을 집행하였다

1) 교대제 위원회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사업

(1) 주간연속 2교대제 정착지원 및 미 전환사업장 도입지원 사업.

울산지부 산하 직 서열 사업자인 덕양산업, 한라공조사내하청은 2013년 3월부터, 세종공업은 9월, 한일이화는 2014년 2월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하였다.

도입초기 현장의 생산 및 근무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다소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1:20분의 연장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큰 무리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가공사업장인 한국프랜지는 10월 한 달 시범실시를 통해 12월말까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확정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프랜지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현대-기아차계열 부품사(위아, 위스코, 메티아등)에 영향을 미쳐, 2015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8+8 직 도입에 따른 월급제 도입 방안마련

울산지부 산하 덕양산업과 한라공조사내하청은 직서열 사업장이며, 나머지 한일이화, 세종공업, 한국TRW, 현대메티아, 한국프랜지는 서열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완성차의 2016년 8+8 직 도입에 합의에 따른 월급제 전환 공동요구안을 울산지역공동위원회 차원의 사업으로 함께 진행하였다.

월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기획팀(울산지부+현대차지부+노조 정책실) 수련회와 5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9월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를 포함한 조합원 설문조사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현황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하였으며, 11월 26(수)~27일(목)에 교육수련회 이후 12월 중, 하순 초안을 울산지부 교대제위원+현대차지부 임금체계개편 및 통상임금위원들이 참여하여 공동요구안을 성안하여, 1월말~2월초 공청회를 거쳐 최종 요구안을 확정 할 예정이다.

(3) 경영분석을 통한 원.하청 불공정 거래 대응방안 및 임.단투 지원사업

교대제위원회는 현대차지부와 공동경영분석을 통한 원.하청 아이템단가와 매출을 분석해 부품가 매입현황의 흐름과 분석을 통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현황과 대안을 마련하여 2015년 금속노조차원의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완성차와 부품사가 밀집된 울산지역에서 공동 경영분석을 통해 자동차 업종의 경영현황 파악과 조합원의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원.하청 공동투쟁의 근거와 불공정 거래 근절의 투쟁정책 수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울산지부 산하 상장사업장들은 2세 승계과정에서 한일이화와 같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 등의 방식을 통해 이윤을 지주회사로 이관하면 중기적으로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이윤축소의 착시현상으로 임.단투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경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지부차원의 통상임금 집단 소송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중단되었던 통상임금 집단소송이 2014년 3월에 3차 재판을 재개하여, 10월 30일 6차 재판을 진행하였다.

현재 재판 진행상황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2,223명에 대해 2010년 1월 ~2013년 3월까지 임금청구액은 산정이 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의 신의칙과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11월~11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경과 설명회를 마치고 12월 중순까지 최종 청구금액을 확정 할 예정이다.

3. 총평

정권과 자본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현재 주 52시간 초과근로 금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노동시간 단축에 여-야 공감하여 통과가 확실시 되며,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울산지부는 자동차산업의 국내공동화 현상에 대비하며 8+8 직 도입 및 월급제 방안을 수립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 대책수립과 노동조건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을 총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미조직비정규위원회]

1. 목표

-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진행
- 각 사업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 삼성관련 노동조합 건설 토대구축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울산분회 강화 및 조직확대
- 현대중공업 및 미포조선등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
- 미조직 공단조직사업 진행

2. 주요사업계획

1)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진행

- 초기와는 다르게 사업계획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등의 미비로 인해 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2) 삼성관련 노동조합 건설 토대구축

- 삼성SDI지회를 건설하하는 성과를 거둬. 현재 사측과 임.단협 교섭중에 있다. 지회 건설이라는 성과가 있으나 조직확대 사업 및 간부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울산분회 강화 및 조직확대

- 울산분회가 만들어진지 1년이 넘어 이제 조직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간부들의 분회운영과 노조에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사업이 배치되어야함.

4) 현대중공업 및 미포조선등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

- 지부 차원의 간부 및 현장역량을 구축하는데 집중하지 못하였다. 노동3권이 지켜지지 않는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조건속에서 지속적인 선전사업등을 통해 일정정도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획기적인 조직적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활동체계 구축
-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 활성화 및 현장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
-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
- 산재은폐 근절투쟁
- 노동안전보건 법제도개악 분쇄 및 권리확보 투쟁
- 금속노조 사업집행 및 조직화 과제

2. 사업평가

2-1).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산추련, 현산회] 활동체계는

⇒ 정기회의(8회), 수련회(1회)를 진행하였다.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가 공동 예산과 공동 활동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다.

2-2).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현장안전점검, 교육선전 사업 등] 활성화 및 현장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은

⇒ 노동안전보건위원 역량강화 교육 / 조합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31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을 하였다.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 조합원 선전 전 및 집회 등 실천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현장안전점검은 지부에서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 8기 8차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2-3).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

⇒ 2011년 중앙교섭에서 현장에 발암물질 조사 사업을 2년 간격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실천지침을 내렸으나, 한일이화지회와 세종공업지회만 진행되었다. 발암물질 없는 울산 만들기에서는 북구 소재 매곡산업단지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대책에 대해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PVC 없는 학교 만들기 진단사업은

5개 학교를 실시하였다.

2-4). 산재은폐 근절투쟁 및 중대재해 대책활동

⇒ 조선사업장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은폐 근절 투쟁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과 부울경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그리고 울산지역 지역 대책위 차원에서 산재은폐 근절투쟁을 진행하였다. 2014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10월 6일 국회 기자회견을 민주당 국회의원(이인영)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과 산재은폐 집단진정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산재은폐의 심각성에 대해 폭로하고 법제도개선 투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역 단위와 울산지역 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지사 타격 투쟁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4년 2월 폭설로 인해 노동현장 실습생 노동자 사망사고와 더불어 2014년 상반기에만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사내하청노동자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울산지역에서는 현장안전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지청 타격투쟁과 교육청 및 해당기관 투쟁 투쟁을 진행함과 더불어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분향소 설치와 노숙농성을 진행하였다. 위 투쟁을 통해 세월호 문제로 불거진 안전의 문제가 노동현장에도 투영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과 더불어 노동부 타격 투쟁을 통해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5). 노동안전보건 법제도개악 분쇄 및 권리확보 투쟁은

⇒ 자본과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악을 비롯한 안전보건 법제도 개악과 공공성 파괴에 맞선 조직적 실천이 중앙(민주노총·금속노조) 차원에서도 무너지고 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한다는 투쟁방침이 서있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판정위원 추천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자본과 정권이 “참여시킴으로써 지배하겠다”는 목적이 관철되는 결정을 민주노총이 하게 된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건강 대책위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건강권 권리선언을 위해 실태조사와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2-6). 산재상담 및 일상활동

⇒ 2014년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와 덕양산업 조합원에 대한 근골격계 최초요양 및 심사청구를 진행하였다. 11건 중 7건 승인, 1건 불승인, 3건이 계류중에 있다.

2-7). 금속노조 사업집행 및 조직화 과제는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주요사업 조직 및 집행을 위해 현장활동을 진행하였다.

3. 총평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 활동체계는[울산지부와 현대자동차지부] 공동예산과 공동활동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기회의와 수련회 등 공동 투쟁이 상시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성과이다.

- 8기 1년차에는 전국적으로 세월호 문제와 울산지역에서는 중대재해와 폭설로 인한 재해 노동현장에 사망사고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화두였다. 이에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와 부울경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와 함께 대책 투쟁을 진행하였다. 지역과 권역의 투쟁체계가 있어서 위 투쟁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노동청과 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의 항의 투쟁을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

- 건강권 대책 투쟁에 있어서는 부울경 권역과 지역별 건강권 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재은폐 및 중대재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타격 투쟁이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통해 근절투쟁을 진행하여 왔다. 민주노총과 부울경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가 공동대응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산재은폐 근절투쟁에 대한 인식 전환과 향후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생산직 노동자 월 2시간(분기별 6시간) 교육을 지회 차원에서 확보하여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안전 등에 대해 노동자의 관점을 가진 교육이 필요하다. 1분기와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소속 지회 중에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장과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향후에는 소속 지회 전체가 조합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선전사업은 조합원 선전전과 미조직노동자 및 대시민 선전전으로 진행되었다. 분

기별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필요한 시기에 따라 선전전을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수면장해 실태조사에 대한 지부 집단교섭의제를 제출하였다. 지부집단교섭에서 수면장해 실태조사와 직업병 신청에 대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지회별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한계를 노출했다.

- 발암물질 없는 울산 만들기는 PVC 없는 학교 만들기와 산업단지 조사사업과 더불어 개선대책 마련에 있다. 위 사업을 PVC 진단사업과 매곡산단 조사와 더불어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향후 산단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불투명 한 것이 현실이다

- 이상 사업 관련 평가를 보면서 8기 1년차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8기 2년차에는 산재은폐 근절투쟁, 현장 일상활동과 현장투쟁, 현장안전점검, 조합원교육, 부울경 권역[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사업 활성화 하고, 노동안전보건 법제도 개악 분쇄 및 권리확보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통일위원회]

1. 목표

- 지부에 통일위원회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활동할 역량을 폭넓게 구축한다.
-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통일사업을 위한 대중적 통일운동 전개
- 지역본부 및 지역의 민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 노조 및 지역에 통일운동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이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 정권과 수구 보수세력의 종북공세에 대한 대응 투쟁

2. 세부사업계획

1) 시기별,계기별 통일투쟁 적극조직

- 주요시기별 사업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반전평화 투쟁전개
- 4.3역사기행은 평가가 해마다 긍정적 나옴, 참여도 늘어남
- 적극적인 통일선봉대 조직으로 22명이 참가하여 반전평화 통일의 기운을 높였다.

2) 대중적 통일사업 전개

- 통일선봉대 참가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에 노동자 겨레 하나를 준비하는 논의중, 앞으로 노동자겨레하나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3) 교육선전사업 강화

- 통일위원회 회의 시작전 30분~40분가량 통일정세교육을 진행하였다.

3. 총평

통일위원회 사업은 시기별 기획사업에 치중되어 왔으나 8-1기 사업에서는 기존 4.3역사기행을 잘 기획하여 많은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어 이후 4.3기행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선봉대의 적극 조직과 이후 사업을 통해 노동자겨레 하나를 건설하여 이후 대중적 통일운동을 열어나갈 통로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과 정세투쟁을 함께 접목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정치위원회]

1. 사업계획

- (1)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화
- (2)지부 정치위원회 안정화
- (3)지회 일상 정치활동 지원
- (4)지역의제 발굴

2. 세부사업평가

(1)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동자후보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내에 노동자정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실천단 구성으로 선거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선거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지부 정치위원회 안정화

-월1회 정치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위원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일상적인 정치교육사업은 선거지원사업으로 용이하지 않았지만 하반기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운동의 전망> 토론은 의미있는 강의였다

(3)지회 일상 정치활동 지원

-금속울산 정치학교 개설은 선거일정의 어려움속에서 2년차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한 일상정치사업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지역의제 발굴

-6.4 지방선거를 통해 금속노동자의 요구사항 공약화하였다 (예 효문지역 노동회관 등)

-현대차지부 정치위원회와 교류는 정치적 여건의 미비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3. 총평

2014년 정치위원회의 핵심과제는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비록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금속울산지부 정치실천단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득표활동과 지회의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2년차에는 선거등의 일정이 없는 해이므로 지회와 지부의 정치담당자들과 조합원들의 일상 정치활동을 보장하는데 역점으로 두는 사업이 요구된다.

.....

금속울산 선거대책본부 평가

성과)

결과는 아쉽지만 지역사업의 경험이 없는 초선후보로서 여론조사결과 인지도를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과 4자구도의 야권난립속에서 지지도 16%를 얻었던 것은 후보를 비롯한 금속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후보로서 이후 집권여당에 맞서는 강력한 노동자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계)

노동자후보를 배출하기 전 깊이있는 논의와 준비가 부족했다.

-선거자금 지원 (세액공제등), 세밀한 후보 지원체계와 각 지회의 집중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소통과 준비가 필요하다.

본선 기간내에 금속선대본과 지역선대본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통이 일부 단절되는등 총괄적인 지휘력이 구축되지 못하였다.

- 지역과 노동을 총괄하는 전체 선대본을 지휘하는 지도주체가 불분명하였다.
- 후보와 유세차일정, 노동과 지역 선거운동원의 체계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이 급변경 되는 등 일사불란하고 통일적인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선 막바지에 집중 결합된 점은 좋았으나 정치위원회와 금속선대본의 결정사항이 지회내에서 관철되지 못한점은 아쉬웠다.

(*결정사항 - 본선기간중 토요일, 일요일 집중, - 평일 1인이상 결합등)

[여성위원회]

1. 사업 목표

- 1) 여성위원장 선임 및 역량 강화
- 2) 성평등 실현, 성폭력 예방, 성차별 해소 사업 강화
- 3) 여성노동자 권리 강화
- 4)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

2. 사업평가

1) 여성위원장 선임 및 여성사업 주체 역량강화

- ① 여성사업담당자 회의 안정화
- ② 각 지회 순회 여성간부 간담회 실시
- ③ 분기별 여성위원회 교육사업

-> 기간 공석이었던 여성위원장을 선임함으로써 지부의 주체를 세워냈다. 그러나 지부가 여성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제해 내지 못하면서 각 지회 여성 사업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지 못했다.

2) 성평등 실현, 성폭력 예방, 성차별 해소 사업 강화

- ① 지부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접 교육 및 교육 강사 지원

-> 확대간부들에 대한 교육은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었으나 실제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피차고 들어가지 못한채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3) 여성노동자 권리강화 사업

- ① 여성노동 관련 투쟁 홍보, 대외 협력사업 진행
- ② 미조직 노동자 대상 여성노동자 권리 홍보

-> 지역전반에서 함께 투쟁을 해나가기로 했으나 주체들을 명확히 못해내면서 행사

치루기 중심의 사업밖에 진행이 되지 못하였다.

4) 노조 수입사업

①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 사업

② 여성간부 수련회 참석

-> 노조 일정과 지역일정이 제대로 규합되지 못했다. 이후 노조와의 적극적 공감대를 형성, 지역여성위의 활동을 강화할수 있는 방향을 함께 논의 하도록 한다.

5)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지역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

-> 3.8 여성대회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다만 조합원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3. 총평

여성사업의 전체 맥락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였다. 이에 여성위원회 회의를 안정화가 가장 우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자 조직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울산지부 8기 1년차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14년 10월 15일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부장 최 용 규 (인), 사무국장 조 일 래 (인)
총무부장 이 정 현 (인)

2014년 10월 15

지부 감사위원 : 안 준 식 (인)
이 상 순 (인)
김 병 진 (인)

감사위원 : 원 대 연 (인)
박 재 근 (인)
이 도 원 (인)
전 경 호 (인)

■ 8기 1년차 1/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2			

■ 8기 1년차 1/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13-11-40	- 출장비 중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누락되었습니다. 지출전표에 증빙자료 누락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전표에 증빙자료 누락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13-12-07	- 차량대장에 주유 기록이 누락되었습니다. 차량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대장에 누락 없이 주유 기록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 8기 1년차 2/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조사통계	-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사무국	- 감사보고서 작성 시 부서별 보고서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감사보고서 양식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8기 1년차 2/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 8기 1년차 3/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조사통계	-	-
2	사무국	-	-

■ 8기 1년차 3/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 8기 1년차 4/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조사통계	-	-
2	사무국	-	-

■ 8기 1년차 4/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14-08-11	- 간담회 뒷풀이 시 세부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 세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 지부 업무차량이 노후에 따른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화된 방송차에 대한 대책을 8-2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부 8기 1년차 4/4분기 결산 보고서

1. 조합원 현황(조합비 납부현황)

기간: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단위 명)

지회	월별	2013년	11월	12월	2014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10월	10월			1월									
1	고강알루미늄	110	111	111	110	111	111	113	115	115	115	115	115	
2	덕양산업	547	547	547	547	547	547	541	541	541	541	533	533	
3	메티아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4	세종공업	495	494	494	495	494	494	490	490	490	490	489	489	
5	한국프랜지	359	359	359	359	359	359	349	349	349	349	349	349	
6	한국TRW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34	134	
7	한라공조 울산	144	144	143	144	144	143	148	143	145	145	145	140	
8	한일이화	468	468	468	468	468	468	477	484	482	482	481	481	
9	현대중공업사내하청	28	29	28	28	29	28	31	32	34	33	35	37	
10	SLT			26	26	26	26	26	해산					
11	말레동현				65	65	65	65	65	62	62	62	62	
12	삼성SDI						16	16	16	16	16	16	16	
13	개별	12	8	5	8	8	9	9	9	9	10	9	7	
합계		2,386	2,387	2,411	2,477	2,478	2,476	2,500	2,479	2,372	2,478	2,474	2,469	

2. 일반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3년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94,989,846	0	94,989,846	7,288,440	7,765,004	8,436,412	8,971,955	8,124,399	8,006,546	7,839,897	8,390,183	8,347,177	8,261,933	8,528,334	8,271,716	98,231,996	-3,242,150	103.41
부과금	부과금	부과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수입	잡수입	잡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0	0	0	0	555	0	0	875	0	0	1,379	0	0	3,577	6,386	-6,386	0
합계			94,989,846	0	94,989,846	7,288,440	7,765,004	8,436,967	8,971,955	8,124,399	8,007,421	7,839,897	8,390,183	8,348,556	8,261,933	8,528,334	8,275,293	98,238,382	-3,248,536	103.42

3. 특별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3년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투쟁 기금	이월금	일반 이월금	16,463,629	0	16,463,629	16,463,629	0	0	0	0	0	0	0	0	0	0	0	16,463,629	0	100	
	이월금	투쟁기금 이월금	15,079,212	0	15,079,212	15,079,212	0	0	0	0	0	0	0	0	0	0	0	15,079,212	0	100	
	본조지 원금	투쟁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수 입	지부자체결 의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0	5,514	0	0	5,028	0	0	4,711	0	0	3,504	18,757	-18,757	0
	소 계			31,542,841	0	31,542,841	31,542,841	0	5,514	0	0	5,028	0	0	4,711	0	0	3,504	31,561,598	-18,757	100.1
미조 직기 금	이월금	이월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미조직 기금	본조지원금	0	0	12,820,000	0	0	0	6,410,000	0	0	0	6,410,000	0	0	0	0	12,820,000	0	100.0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0	0	385	0	0	0	775	0	0	952	2,112	-2,112	0	
	소 계			0	0	12,820,000	0	0	0	6,410,000	0	385	0	6,410,000	775	0	0	952	12,822,112	-2,112	100
합계			31,542,841	0	44,362,841	31,542,841	0	5,514	6,410,000	0	5,413	0	6,410,000	5,486	0	0	4,456	44,383,710	-20,869	100.05	

4. 공동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3년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지역 공동 사업비	이	공동	108,420,123	0	108,420,123	0	0	0	0	0	0	0	0	0	0	0	108,420,123	0	100	
	월	사업																		
	금	금																		
	본	공동	87,680,235	0	87,680,235	7,101,597	0	14,810,238	7,392,654	7,334,789	7,261,882	7,276,951	7,347,709	0	14,711,656	7,329,715	7,355,503	87,922,694	-242,4590	100.30
	조	사업																		
	지	비																		
	급																			
	금																			
	비																			
	기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타	수입																		
	수																			
	입																			
	비																			
	잡	이자	0	0	0	0	0	42,424	0	0	51,858	0	0	71,486	0	0	69,346	235,114	-235,1140	0
	수	수입																		
	입																			
	비																			
	합	계	196,100,358	0	196,100,358	7,101,597	0	14,852,662	7,392,654	7,334,789	7,313,740	7,276,951	7,347,709	71,486	14,711,656	7,329,715	7,424,849	196,577,931	-477,573	100.24

5. 일반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2013년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관영비	유지비	관리비	3,600,000	0	3,600,000	281,312	0	469,009	273,512	344,072	373,410	373,410	221,419	223,223	0	560,575	302,743	3,422,685	177,315	95.07	
		차량유지비	6,600,000	0	6,600,000	1,526,800	420,000	605,000	1,101,200	550,000	601,810	140,000	260,500	371,750	556,000	200,000	260,000	6,593,060	6,940	99.89	
		신문도서비	480,000	+54,000	534,000	0	0	206,000	186,000	18,000	33,000	0	0	37,000	0	0	0	480,000	54,000	89.89	
		소모품비	2,000,000	0	2,000,000	113,400	98,600	211,700	37,600	295,000	101,440	295,000	61,400	0	290,450	30,000	54,400	1,588,990	411,010	79.45	
		통신비	2,500,000	0	2,500,000	2,020	334,920	183,270	233,950	169,980	175,870	138,100	146,780	206,900	156,320	182,010	177,520	2,107,640	392,360	84.31	
		비품비	2,000,000	-54,000	1,946,000	0	0	990,000	0	0	0	0	0	0	0	0	500,000	0	1,490,000	456,000	76.57
		기타유지비	600,000	0	600,000	95,000	0	0	70,500	73,600	0	0	47,000	0	73,100	0	49,300	408,500	191,500	68.08	
		항의 소계	17,780,000	0	17,780,000	2,018,532	853,520	2,664,979	1,902,762	1,450,652	1,285,530	946,510	737,099	838,873	1,075,870	1,472,585	843,963	16,090,875	1,689,125	90.50	
	복리 후생비	복리후생비	13,720,000	0	13,720,000	1,074,700	1,113,200	933,800	947,500	986,500	917,500	976,600	919,500	880,000	902,500	900,000	1,512,000	12,063,800	1,656,200	87.93	
		항의 소계	13,720,000	0	13,720,000	1,074,700	1,113,200	933,800	947,500	986,500	917,500	976,600	919,500	880,000	902,500	900,000	1,512,000	12,063,800	1,656,200	87.93	
	업무 추진비	직무활동비	12,000,000	0	12,000,000	600,000	600,000	1,8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2,000,000	0	100.00	
		항의 소계	12,000,000	0	12,000,000	600,000	600,000	1,8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2,000,000	0	100.00	
	관의 소계		43,500,000	0	43,500,000	3,693,232	2,566,720	5,398,779	3,850,262	3,437,152	3,203,030	2,923,110	2,656,599	2,718,873	2,978,370	3,372,585	3,355,963	40,154,675	3,345,325	92.31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8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관	항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율 (%)				
			당초예산	경정전용	최종예산	2013년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사	업	여비	출장비	7,560,000	+1,000,000	8,560,000	600,000	977,600	1,024,200	665,800	1,096,800	629,400	883,600	175,000	627,900	607,400	243,400	880,600	8,411,700	148,300	98.27		
			항의 소계	7,560,000	1,000,000	8,560,000	600,000	977,600	1,024,200	665,800	1,096,800	629,400	883,600	175,000	627,900	607,400	243,400	880,600	8,411,700	148,300	98.27		
사	업	회 의 비	총회	1,000,000	0	1,000,000	0	392,000	0	0	38,000	0	0	0	0	0	0	0	430,000	570,000	43.00		
			대의원대회	5,000,000	0	5,000,000	0	650,000	2,608,230	0	0	1,708,110	0	0	0	0	0	0	0	4,966,340	33,660	99.33	
			운영위원회	1,400,000	0	1,400,000	220,000	412,000	0	100,000	104,000	300,000	0	0	0	200,000	0	0	0	1,336,000	64,000	95.43	
			집행위원회	1,000,000	0	1,000,000	150,000	407,000	0	0	0	115,000	0	0	0	0	0	0	0	672,000	328,000	67.20	
			기타회의비	400,000	0	400,000	0	0	0	0	0	0	22,000	0	75,000	0	0	0	0	97,000	303,000	24.25	
			항의 소계	8,800,000	0	8,800,000	370,000	1,861,000	2,608,230	100,000	142,000	2,123,110	22,000	0	75,000	200,000	0	0	0	7,501,340	1,298,660	85.24	
			수련 회비	교섭위원수련회	1,200,000	0	1,200,000	0	0	0	0	0	0	1,047,600	0	0	0	0	0	0	1,047,600	2,095,200	87.30
				항의 소계	1,200,000	0	1,200,000	0	0	0	0	0	0	1,047,600	0	0	0	0	0	0	1,047,600	2,095,200	87.30
			부 서 사 업 비	총무사업비	480,000	0	4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40,000	240,000	50.00
				조직사업비	4,000,000	0	4,000,000	0	0	120,000	368,400	573,000	225,000	437,550	439,200	170,000	710,000	533,000	246,000	0	3,822,150	177,850	95.55
노안사업비	1,700,000	+244,000		1,944,000	0	180,000	119,000	0	364,000	30,000	361,000	300,000	190,000	50,000	0	0	0	1,594,000	350,000	82.00			
교육정책사업비	2,500,000	+300,000		2,800,000	0	0	71,400	215,350	290,020	1,002,640	74,000	87,760	0	689,400	0	341,400	0	2,771,970	28,030	99.00			
선전사업비	6,000,000	0		6,000,000	261,360	231,000	401,000	347,500	250,650	678,100	49,500	270,250	1,378,200	524,700	287,600	118,800	0	4,798,660	1,201,340	79.98			
조사통계사업비	1,500,000	0		1,500,000	0	505,000	97,000	87,000	238,000	0	96,000	0	0	209,000	0	0	0	1,232,000	268,000	82.13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8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문화체육사업비	6,000,000	-544,000	5,456,000	0	0	0	0	0	0	0	0	0	0	0	1,294,280	1,294,280	4,161,720	23.72
	항의 소계	22,180,000	0	22,180,000	281,360	936,000	828,400	1,038,250	1,735,670	1,955,740	1,038,050	1,117,210	1,758,200	2,203,100	840,600	2,020,480	15,753,060	6,426,940	71.02
연 대 사 업 비	대외협력비	1,840,000	0	1,840,000	60,000	160,000	265,000	8,200	100,000	181,000	340,000	0	147,500	200,000	0	280,000	1,741,700	98,300	94.66
	항의 소계	1,840,000	0	1,840,000	60,000	160,000	265,000	8,200	100,000	181,000	340,000	0	147,500	200,000	0	280,000	1,741,700	98,300	94.66
위 원 회	통일위원회	1,000,000	0	1,000,000	0	0	0	0	0	400,000	0	0	0	0	0	550,000	950,000	50,000	95.00
	정치위원회	2,000,000	+400,000	2,400,000	0	0	0	120,000	450,000	50,000	64,000	819,000	474,000	0	0	250,000	2,227,000	173,000	92.79
	여성위원회	500,000	0	500,000	0	0	0	75,000	0	77,000	29,000	0	0	0	0	97,000	278,000	222,000	55.60
	미비위원회	3,000,000	-400,000	2,600,000	460,720	319,400	247,150	0	0	599,500	0	0	0	0	0	24,000	1,650,770	949,230	63.49
	단협위원회	300,000	0	300,000	0	0	0	105,000	0	0	0	0	60,000	100,000	35,000	0	300,000	0	100.00
	감사위원회	600,000	0	600,000	120,000	0	0	158,000	0	0	0	48,000	0	0	48,000	0	375,000	225,000	62.50
	항의 소계	7,400,000	0	7,400,000	580,720	319,400	247,150	458,000	450,000	1,126,500	141,000	819,000	534,000	148,000	35,000	921,000	5,780,770	1,619,230	78.12
집회 행 사 비	집회행사비	1,500,000	0	1,500,000	0	176,000	0	0	0	0	0	0	0	0	1,134,840	0	1,310,840	189,160	87.39
	항의 소계	1,500,000	0	1,500,000	0	176,000	0	0	0	0	0	0	0	0	1,134,840	0	1,310,840	189,160	87.39
	관의소계	50,480,000	0	51,480,000	1,892,080	4,430,000	4,972,980	2,271,250	3,524,470	6,015,750	3,472,250	2,111,210	3,142,600	3,358,500	2,253,840	4,102,080	41,547,010	9,932,990	80.71
예 비 비	예비비	1,009,846	-1,000,000	9,846	0	0	0	0	0	0	0	0	0	0	0	0	0	9,846	0.00
	항의소계	1,009,846	0	9,84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관의 소계	1,009,846	0	9,846	0	0	0	0	0	0	0	0	0	0	0	0	0	9,846	0.00
	합계	94,989,846	0	94,989,846	5,585,312	6,996,720	10,371,759	6,121,512	6,961,622	9,218,780	6,395,360	4,767,809	5,861,473	6,336,870	5,626,425	7,458,043	81,701,685	13,288,161	86.01

6. 특별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예산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 율 (%)
관	항	목				2013년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투쟁	투쟁	투쟁	31,542,841	0	31,542,841	327,900	3,196,840	1,638,530	1,158,090	0	1,972,750	2,180,000	5,090,200	2,585,268	-4,916,666	3,160,480	3,097,000	19,490,392	12,052,449	61.79
미	미	공	0	0	12,820,000	0	0	0	2,800,000	1,000,000	1,000,000	600,000	1,950,000	0	1,350,000	600,000	600,000	9,900,000	2,920,000	77.22
조	조	단																		
직	직	조																		
기	기	화																		
금	금	사																		
		업																		
		비																		
지	지	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	부	부																		
결	결	사																		
의	의	업																		
금	금	비																		
합	합	계	31,542,841	0	44,362,841	327,900	3,196,840	1,638,530	3,958,090	1,000,000	2,972,750	2,780,000	7,040,200	2,585,268	-3,566,666	3,760,480	3,697,000	29,390,392	14,972,449	66.25

7. 공동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률 (%)	
관	항	목				2013년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지역공동 사업비	이월금	공동사업 이월금	108,420,123	0	108,420,123	0	0	0	0	0	0	0	0	0	0	0	0	0	108,420,123	0.000
	본조지급금	공동사업비	87,680,235	0	87,680,235	0	0	0	0	0	0	0	0	12,583,950	6,200,000	925,700	14,984,000	34,693,650	52,986,585	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96,100,358	0	196,100,358	0	0	0	0	0	0	0	0	12,583,950	6,200,000	925,700	14,984,000	34,693,650	161,406,708	17.70

8. 총 수입 및 총 지출 현황

기간: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단위 원)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 율(%)
일반회계		98,238,382	81,701,685	16,536,697	83.17
특별회계	투쟁기금	31,561,598	19,490,392	12,071,206	61.75
	미조직기금	12,822,112	9,900,000	2,922,112	77.21
공동회계		196,577,931	34,693,650	161,884,281	17.65
합계		339,200,023	145,785,727	193,414,296	42.98

9. 총수입, 총지출, 시재 현황

기간: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98,238,382	81,701,685	16,536,697	1002-949-639978	16,536,697	조합비 수입 및 사업비 지출	
					현금보유			
	소계	98,238,382	81,701,685	16,536,697	소계	16,536,697		
특별회계	투쟁기금	31,561,598	19,490,392	12,071,206	1002-849-668502	12,071,206	투쟁기금	
	미조직기금	12,822,112	9,900,000	2,922,112	1002-949-676247	0	미조직사업	
					현금보유	0		
	소계	44,383,710	29,390,392	14,993,318	소계	12,071,206		
공동회계	공동사업비	196,577,931	34,693,650	161,884,281	1002-649-657561	161,884,281	공동사업비	
	소계	196,577,931	34,693,650	161,884,281		161,884,281		
합계	339,200,023	145,785,727	193,414,296	합계	190,492,184			

안건 2 8기 2년차 사업계획 확정건의

의결주문

제출된 ‘8기 2년차 사업계획(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기 2년차 총괄 사업계획]

1. 사업기초

- 학습하며 투쟁하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 현장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제2의 정치세력화.
- 공단 조직화 사업 및 조선산업 조직화를 위한 현실적인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진행.
- 현장 조합원을 노동조합의 주체로 세우는 현장조직력 강화.
-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노동자 자주통일사업.
- 지역공동운영위를 통한 지역지부, 기업지부의 일치성을 높여 금속노조 강화.
- 반 박근혜 전선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사업 강화.

2. 사업방향과 목표

- (1) 교육사업의 혁신으로 지회 간부, 조합원 교육 강화
- (2) 주체적인 참여로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 (3)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 현실화
- (4) 조합원 중심의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노동자 자주통일사업
- (5) 현장조직력 강화 및 조합원, 가족 문화사업
- (6) 지역공동위원회의 안착화
- (7) 지역 연대사업 확대 강화

3. 세부사업계획

- (1) 교육사업 혁신으로 지회 간부, 조합원 교육강화
 - 체계적이고 창의성 있는 간부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 간부, 조합원 교육의 일상화

(2) 노동자 정치사업 강화

- 2014년 지자체 선거에 주체적 참여로 현장 주체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화
- 지회 일상 정치 활동 지원
- 현장의 요구에 의한 노동의제 및 지역의제 발굴
- 노동자 정치아카데미 등 교육사업 활성화

(3) 미조직 사업 본격화

- 공단 전략 조직화 사업
- 조선업종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울산분회 강화 및 조직 확대
- 삼성계열사 노동조합 건설 토대 구축

(4) 노동자 자주통일사업 강화

- 남북 노동자 통일추구대회를 통한 광복 70주년을 조합원 중심의 일상적, 대중적 노동자 자주통일사업 전개, 남북 민간교류의 중심에 노동자들이 선다.
-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와 방언규탄 투쟁(위안부 소녀상 건립운동 등)
- 대중적 통일실천단 구성
- 정권의 종북공세에 대한 대응투쟁
- 조합원 통일기행
- 지역 유관단체와 연대사업 강화

(5) 지역공동운영위 안착화

- 지역공동운영위 정례화 및 안정화
- 전략공동사업 선정 및 집행
- 공동 부서회의 및 공동 위원회 회의
- 지역 의제 발굴 및 공동 투쟁

(6) 현장 조직력 강화 및 조합원 문화사업

- 결의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한 실천력 담보를 통한 집행력 강화

- 다양한 방식의 현장순회 및 현장의견수렴
- 현장 보고대회의 일상화를 위한 기초 마련
- 조합원, 가족 문화 기행, 체험학습 마련

(7) 지역 연대사업 강화

- 반 박근혜 전선구축을 위한 지역 연대체 확대 및 공동사업 강화.
-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소통, 협력관계 강화
- 현실적인 소외계층 지원 사업 방안 마련과 실행

각 부서, 위원회 사업계획

[조직부]

1. 사업목표 및 방향

-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내실화
 -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정례화
 - 지부-지회 연계 지부 집행사항의 관철

- 2) 지부조직강화사업
 - 조합원 가족문화사업 및 단합대회등 주관

- 3) 현장조직력 강화사업
 - 정기적인 지회, 현장순회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 신속한 투쟁요구시 대응

- 4) 취약지회 조직 및 투쟁사업
 - 신규지회 및 노조불안정 지회의 조직 및 투쟁사업 지원

2. 사업계획

-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내실화
 -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월1회 정례화
 - 조직쟁의담당자수련회 실시
 - 회의 및 수련회에서 교육과 투쟁의 효율적 배치로 조직담당자들의 역량강화
 - 회의 개최는 지부와 지회 순회방식으로 개최
 - 현대차지부 조직실과 연계 양지부 교류협력의 교두보 마련

2) 지부조직 강화사업

- 신규지회 설립 및 조직화로 지부 조직력 강화
- 조합원 가족문화사업 진행과 지회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단합대회등 지부 조직력 강화

3) 현장조직력 강화사업

- 지부-지회임원 현장순회
- 지회 대의원대회, 상집회의 지부 일상적 간담회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 신속한 투쟁요구시 대응방안 마련

4) 취약지회 조직 및 투쟁사업

- 신규지회 및 노조불안정 지회의 조직 및 투쟁사업 지원
- 말레동현 통상임금 및 복수노조 대응투쟁
- 삼성SDI, 삼성전자서비스, 현중사내하청지회등 조직력이 취약한 지회 투쟁사업 지원

[교육선전부]

1. 사업 목표

- 1) 간부, 조합원 의무교육 안정화
- 2) 교육선전 주체역량 강화
- 3) 지회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4) 선전사업 유기적 안정화
- 5) 교육위원회 활동 강화

2. 사업내용

< 교육사업 >

1) 간부, 조합원 의무교육 안정화

① 간부 교육

- 1월~6월 확대간부 교육을 안정적으로 진행한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역사를 제대로 보고 우리의 역할과 과제를 내다보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② 교섭위원 교육

- 교섭 상근기간 6차례의 교육과 실천투쟁을 진행한다.

③ 조합원 교육

- 조합원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기행사업 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선전 주체역량 강화

① 교육선전 역량강화

- 회의를 정기적으로 안정화 한다.
- 회의시 1시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② 선전학교 개최

- 교육과 선전은 집행부의 입이다. 선전담당자들의 역량을 극대화 할수 있는 선전학교를 지부자체로 진행한다.

3) 지회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지회별 상황과 간부조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
- 영상, ppt등 지회에서 활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 선전사업>

1) 지부소식지, 대자보 , 속보 발행

- 일상적인 교육 대자보 발행
-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따른 대자보 발행
- 투쟁속보, 교섭속보 포함

2) SNS 및 홈페이지

- 각 지회 교육선전과 연동하는 sns 선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 홈페이지 관리를 지부 조직부와 유기적으로 진행한다.

< 교육위원회 활동강화 >

- 1) 정기적 교육위원회 회의 및 교육 진행
- 2) 교육내용별 담당자 선임
- 3) 신생지회, 초임간부, 역사교육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 교육배치

[조사통계 및 교대제 위원회]

1. 사업목표

- 주간연속 2교대제 정착지원 및 8+8 직도입 방안 마련
- 주간연속 2교대제 8+8 직도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월급제 도입방안
- 통상임금 집단소송 지원
- 교대제위원회 및 조통담당자 집행체계 구축으로 지부의 정책조사역량강화
- 지부 산하 사업장 경영분석 및 일상적 경영감시 체계 구축
- 지부, 지회의 총무, 재정업무의 통일된 기준 정비 및 교육
- 지회 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부감사위원회 사업지원

2. 사업내용

1) 주간연속 2교대제에 정착지원 및 8+8 직도입 방안 마련

- 주간연속 2교대제 미전환 사업장 교섭지원 및 이행방안 수립
- 주간연속 2교대제 정착지원 방안 및 후속 사업 집행
- 교대제에 따른 생활임금 대책 수립을 위한 단,중기적 대책수립
- 주간연속 2교대제 8+8 직도입에 따른 완성차와 공동사업 추진

2)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8+8 직도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월급제 도입 방안 마련

- 주간연속 2교대제 완성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수립
- 임금체계 개편에 대비 고정급 확대를 위한 지회 단체협약 개정 요구방안 마련

3) 통상임금 집단소송 지원

- 통상임금 집단소송 진행 법률원 지원사업 수립
- 소송에 소요되는 각종 근거자료 입안

4) 지부 산하 사업장 경영분석 및 일상적 경영감시 체계 구축

- 경영분석 기초 실무교육(간부대상 1박 2일)
- 지회별 경영분석 및 경영참여 및 감시방안 마련

5) 노조 조사통계 수입사업

- 임금인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 (표준생계비 등)
- 사업장별 기초실태조사
- 단협 취합 분석-> 자료화 등
- 금속노조의 정책조사 수입사업 집행

6) 지부, 지회의 총무, 재정업무의 통일된 기준 정비 및 교육

- 지회의 총무.재정업무 담당자간의 송통을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통일 된 기준안을 정비해나간다.
- 노조가 권고하는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회계일원화 및 일상적 교육을 강화한다.

6) 지부 회계 역량강화 교육 및 지부감사위원회 사업지원강화

- 노조 회계프로그램 사용지원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총무 회계담당자 분기 회의 개최와 수련회 개최한다.
- 지부.지회 감사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회의체계 활성화 및 사업지원

[미비위원회]

1. 사업목표

-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진행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울산분회 강화 및 조직확대
-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 사업 집행
- 미조직공단 조직사업 강화

2. 사업계획

- 1)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진행
 - 월 1회 회의 정례화/분기별 1회 미조직비정규직위원 교육진행
- 2)교육선전사업
 - 현대중공업 및 미포조선 선전활동 강화
 - 온산,장생포 선전활동 분기별 1회 진행
 - 현대중공업사내하청 및 미포조선 노동자 분기별 1회 간담회 진행
- 3)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울산분회 강화 및 조직확대
 - 삼성전자서비스 울산분회 간부교육 진행
 - 조합원 교육 및 실천활동 진행, 일상적 노조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4)미조직 공단조직화 사업
 - 가능한 공단지역에 대한 조직화사업의 기초 토대 마련
 - 미조직 사업의 주체 발굴을 위한 사업진행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선전사업진행
- 5)전략공단 조직화사업
 -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 사업(조선하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기획 및 집행
 - 조선소 밀집지역 선전사업 및 주체 발굴사업

[통일위원회]

1. 사업목표

- 분단 70년,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분단의 고리를 끊어내는 대대적 실천사업 전개
- 한미일 군사협정 추진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내고 한반도 전쟁책동 야욕 분쇄 실천투쟁
- 반전평화 투쟁의 핵심은 조직된 노동자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통일위원회 역량 강화
- 정권과 수구 보수세력의 종북공세, 진보세력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을 전개

2. 세부 사업계획

1) 분단 70년, 분단의 고리를 끊어내는 대대적 실천사업 전개

- 분단 70년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알려내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사업 및 기행사업 전개
- 남북노동자 교류의 재시작을 위해 양대노총이 합의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성사
- 군사주권까지 버리는 정권규탄 투쟁 대중적 진행
- 분단으로 인한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 나갈 다양한 사업 전개

2) 한미일 군사협정의 실상을 알리고 전쟁책동 야욕을 막아내는 실천투쟁 전개

- 한미일 군사협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내는 교육사업 전개
- 전쟁책동 반대, 다양한 실천투쟁 전개
-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모금 적극 추진

3) 반전평화 투쟁의 핵심은 노동자, 지부 통일위원회 강화

- 분단 70년, 반전평화 투쟁의 핵심은 노동자, 교육선전사업 전개
- 지부 통일위원회 역량강화
- 남북교류사업 및 분단 70년 투쟁 사업 기획단 역할 강화

4) 종북공세 및 진보세력 죽이기에 대한 강력대응 투쟁 전개

-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파상적인 종북공세에 대응하는 교육 사업 및 실천사업 진행
- 진보세력 죽이기에 나선 정권과 도를 넘은 수구보수세력에 강력 대응 실천투쟁 전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목표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체계를 강화 안정화하고 공동사업과 연대투쟁을 실현.
- 지부.지회의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건강권 대책투쟁을 활성화.
- 사업장별 현장안전점검을 지부 관장하에 진행.
-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부와 노조 차원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발암물질 없는 울산 만들기” 사업에 적극 복무.
- 산재은폐 근절투쟁 진행.
- 사업장별로 재해발생시 재해발생보고와 철저한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직업병에 대해 최초요양신청과 불승인시 근로복지공단 등 해당기관 타격투쟁을 통해 대응 체계를 구축.
- 지회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지회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합의사항에 대해 지부에 보고하고 평가를 진행.
- 법제도 개악에 따른 산재노동자 권리확보와 일상적인 투쟁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 대책위 활동에 적극 복무.
-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대책활동 활성화.
- 산재보험법 제도개혁 및 안전보건 권리확보 투쟁의 전면화.
- 금속노조 사업 조직 및 집행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

2. 사업계획

가. 조직 및 투쟁사업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내실화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시 현장안전점검 실시
-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 및 수련회
- 사업장별 작업환경 개선사업 진행
⇒ 안전점검 공동 실시 및 후속대책 마련
- 중대재해 및 산재사고 발생시 보고와 대책투쟁 구축

- 산재은폐 관련 산업안전보건 개선 투쟁
- 산재은폐 근절투쟁
- 직업병 요양신청서 지부 검토 후 산재신청
- 발암물질 조사 사업 지회별 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및 합의사항에 대해 지부에 보고하고 평가
- 노동안전보건 현안투쟁 및 대책투쟁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 지회 일상활동 강화
- 기타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교육선전사업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지회 산업안전보건위원 교육(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시)
- 대시민 선전활동의 강화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기획 교육 및 선전
- 조합원 교육(안전교육시간 활용)
- 지회별 산업안전보건위원 교육
- 노동안전보건 선전지 발행

다. 수입사업

- 금속노조 사업집행
 - ⇒ 금속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
 - 산재보험 제도개악 분쇄 및 산재노동자 권리 확보 투쟁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집행
- 노동안전보건 단체와의 연대

라. 건강권 쟁취 대책활동 강화

- 산재보험법 제도개혁과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과 투쟁
 - ⇒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 발암물질 없는 울산 만들기 활동
-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악 및 규제완화 저지 및 제도개선 투쟁

[정치위원회]

1. 사업목표

- (1)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화
- (2) 지부 정치위원회 안정화
- (3) 지회 일상 정치활동 지원

2. 사업계획

- (1)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화
 -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치위원회 활동 강화
 - 상급단체 주관의 노동자정치사업 지회단위까지 참여조직
- (2) 지부 정치위원회 안정화
 - 월1회 정치위원회 회의 정례화
 - 일상적인 정치교육사업
- (3) 지회 일상 정치활동 지원
 - 2015 금속울산 [정치학교] 개설
 - :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치 의제 토론
 - 현장에서의 진보정당활동 지원
 - : 현장정치활동의 형식, 내용, 방법 연구 및 현실화 지원

[여성위원회]

1. 사업 목표

- 1) 여성위원회 회의 안정화
- 2) 성평등, 가정내 평등의 교육사업을 다양화
- 3) 3.8여성의 날 사업 강화
- 4) 노조 수임사업

2. 사업계획

- 1) 여성위원회 회의 안정화
 -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
 - 회의시 여성위원회 10분~20분의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
- 2) 성평등, 가정내 평등 교육사업 다양화
 - 성평등, 성폭력의 교육을 조합원 교육까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조합원 연령의 고령화,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달라지는 가족내 역할에 맞게 가정 내의 역할 평등과 관련한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 3) 3.8여성의날 사업 강화
 - 노동자, 여성의 이름으로 불평등과 맞서 싸웠던 의미를 명확히 한다
 - 여성조합원에 국한하지 않고 지부 전체 조합원이 함께 공유하고 작은 실천의 기반을 마련할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 각 지회별 순회 간담회 진행
- 4) 노조 수임사업

의결주문

제출된 ‘8기 1년차 사업예산(안)’ 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부 교부금 산정방식〉

1. 8기 2년차 지역지부교부금 계산방법입니다.

- (1)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19,6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52,500명입니다.
- (2) 1개월 전체 지부 몫은 52,500명 X 19,600원 X 0.17 = 174,930,000원 입니다.
- (3) 전체 지부 몫에서 최저교부금이 지원됩니다. 현재 8개지부에 월 6,200,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부 몫에서 6,200,000원이 지급되면 168,730,000원이 남게 됩니다.
- (4) 남은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을 구하면 3,213원이 나옵니다.
- (5) 같은 방식으로 2014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임금인상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은 3,380원입니다.
- (6) 최저교부금을 받는 지부의 월 수입은 최저교부금 +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조합원수)이 됩니다.
- (7) 최저교부금을 받지않는 지부의 월(한달)수입은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조합원수입니다.
- (8) 지부(납부)조합원수 산정시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구분	2014년 10월~2015년 06월 (월 수입)	2015년 07월~2015년 09월 (월 수입)
최저교부금 0	최저교부금+(3,213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3,380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 x	3,213원 × 지부(납부) 조합비	3,380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월 교부금

- 최저교부금 300,000원+(1인당교부금 3,213원×조합원 2,483명)
= 8,277,879원 (2014년 10월~2015년 6월)
- 최저교부금 300,000원+(1인당교부금 3,380원×조합원 2,483명)
= 8,692,540원 (2015년 7월~2015년 9월)

◎ 8기 2년차 교부금 - 100,578,531원

- 월 교부금 8,277,879원×9개월 = 74,500,911원 (2014년 10월~2015년 6월)
- 월 교부금 8,692,540원×3개월 = 26,077,620원 (2015년 7월~2015년 9월)

2. 8기 2년차 지역공동사업비 계산방법입니다.

1) 지역지부

- (1) 2014년 10월부터 2015년 06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19,6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52,500명입니다.
- (2) 2015년 06월까지 한달에 지역공동사업비는 52,500명 X 19,600원 X 0.01 = 10,290,000원입니다.
전체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196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3) 같은 방식으로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임금인상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05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4) 지역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 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X 지부(조합비 납부)조합원수)이 됩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지역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구분	2014년 10월~2015년 06월 (월 수입)	2015년 07월~2015년 09월 (월 수입)
지역공동사업비	196원 ×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205원 ×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2) 기업지부

- (1) 2014년 10월부터 2015년 06월까지 기업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4,500원으로 산정합니다. 기업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91,800명입니다.
- (2) 2015년 06월까지 한달 지역공동사업비는 91,800명 X 24,500원 X 0.01 = 22,491,000원입니다.
전체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45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3) 같은 방식으로 2014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임금인상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57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4) 기업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 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X 지부(조합비 납부)조합원수)이 됩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기업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구분	2014년 10월~2015년 06월 (월 수입)	2015년 07월~2015년 09월 (월 수입)
지역공동사업비	245원 ×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257 ×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1. 울산지부 월 공동사업비

196원 × 조합원 2,483명 = 486,668원 (2014년 10월~2015년 6월)

205원 × 조합원 2,483명 = 509,015원 (2015년 7월~2015년 9월)

2. 울산지부 7기 1년차 공동사업비 - 5,907,057원

486,668원(월) × 9개월 = 4,380,012원 (2014년 10월~2015년 6월)

509,015원(월) × 3개월 = 1,527,045원 (2015년 7월~2015년 9월)

3. 현대자동차지부 월 공동사업비

4. 현대자동차지부 8기 1년차 공동사업비

5. 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공동사업비 총예산

울산지부(5,907,057원) + 현대자동차지부(원) = (원)

8기 2년차 예산(안)

【수입지부】

기간 : 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 금액 : 원

과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월 교부금 8,277,879원×9개월 = 74,500,911원 월 교부금 8,692,540원×3개월 = 26,077,620원	100,578,531원
부과금	부과금	부과금		0원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0원
	잡수입	잡수입	10,000(이자수입)	10,000원
총계 100,588,531원				

【특별회계 수입 현황】

기간 : 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 금액 : 원

과 목			예산액
관	항	목	
투쟁기금	이월금	일반 이월금	16,463,629원
	이월금	투쟁기금이월금	15,079,212원
	본조지원금	투쟁사업비	
	잡수입	이자수입, 해지환급금	30,000원
	소 계		
미조직기금	이월금	이월금	원
	미조직기금	본조지원금	
	잡수입	이자수입	원
	소 계		
합계			원

【 지출부 】

과 목			목 번	8기 세부내역	8기 2년차	총액대비 예산율(%)	8기 1년차	집행율
관	항	목						
운 영 비	유지비	관리비	1	사무실관리비 등 월300.000원*12개월	3,600,000	3.58	3,600,000	95.07
		차량유지비	2	주유,보험,수리등 월550.000원*12개월	6,600,000	6.56	6,600,000	99.89
		신문도서비	3	신문, 자료구입등 40.000월*12개월	480,000	0.48	480,000	89.89
		소모품비	4	소모품,사무용품,토너등	2,000,000	1.99	2,000,000	79.45
		통신비	5	통신비,전화비,우편비용등	2,500,000	2.49	2,500,000	84.31
		비품비	6	비품구입비(컴퓨터, 모니터, 의자등)	2,000,000	1.99	2,000,000	76.57
		인쇄비	7	각종 자료 인쇄	100,000	0.10	0	
		기타유지비	8	커피, 외부인사 방문 등	600,000	0.59	600,000	68.08
	복리 후생비	복리후생비	9	사무국식비 월 154.000×8인×12개월 철농, 당직, 식비 등 100.000원×12개월 사무국 건강검진 200.000원×6인 사무국 근무복 70.000원×8인	18,452,000	18.34	13,720,000	87.93
	업무 추진비	직무활동비	10	직무활동비 1,000.000원*12개월	12,000,000	11.93	12,000,000	100.00
관의소계					48,332,000	48.05	43,500,000	92.31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11	서울↔울산1박2일기준 150,000원×7×0.65×12개월	8,190,000	8.14	7,560,000	98.27
	회의비	총회	12	공고, 투표용지, 포스터, 선거관리비 등	1,500,000	1.49	1,000,000	43.00
		대의원대회	13	정기대의원대회350만원 임시의원대회 250만원	6,000,000	5.96	5,000,000	99.33
		운영위원회	14	월1회×116,666원×12개월	1,400,000	1.39	1,400,000	95.43
		집행위원회	15	월2회×41,667원×12개월	1,000,000	0.99	1,000,000	67.20
		기타회의비	16	년간 300,000원	300,000	0.30	400,000	24.25
	수련 회비	교섭위원 수련회	17	교섭위원 수련회	1,200,000	1.19	1,200,000	87.30
	부서 사업비	총무사업비	18	40,000원 × 12개월	480,000	0.48	480,000	50.00
		조직사업비	19	조직사업비, 부서사업비, 투쟁사업비	4,500,000	4.47	4,000,000	95.55
		노안사업비	20	부서사업비	2,000,000	1.99	1,700,000	82.00
		교육사업비	21	부서사업비	2,500,000	2.49	2,500,000	99.00
		선전사업비	22	부서사업 소식지, 대자보 현수막 등	6,000,000	5.96	6,000,000	79.98
		조사통계 사업비	23	부서사업비 및 교대제 위원회 사업비	1,500,000	1.49	1,500,000	82.13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8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문화체육 사업비	24	간부 단합대회 및 조합원 문화사업비	3,000,000	2.98	6,000,000	23.72
연대 사업비	대외협력비	25	타조직 연대 등	1,840,000	1.82	1,840,000	94.66
위원회	통일위원회	26	통일위 사업비	1,500,000	1.49	1,000,000	95.00
	정치위원회	27	정치위 사업비	2,000,000	1.99	2,000,000	92.79
	여성위원회	28	여성위 사업비	500,000	0.50	500,000	55.60
	미/비위원회	29	미/비위 사업비	3,000,000	3.00	3,000,000	63.49
	단협위원회	30	단협위 사업비	600,000	0.60	300,000	100.00
	감사위원회	32	감사위 사업비	600,000	0.60	600,000	62.50
집회 행사비	집회행사비	33	집회 행사비	1,500,000	1.49	1,500,000	87.39
	관의소계			51,110,000	50.81	50,480,000	80.71
예 비 비	예비비	공동사업비	34				
		예비비	35	예비비	1,146,531	1.14	1,009,846
합계				100,588,531	100.00	94,989,846	86.01

안건 4 금속노조 8기 2년차 중앙위원 선출 건

의결주문

제출된 금속노조 8기 2년차 중앙위원 선출건을 운영위에 위임해 주실 것을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 5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의결주문

제출된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을 운영위에 위임해 주실 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주문

기타안건을 심의해 주십시오.

안건 7 결의문 채택의 건

의결주문

별도로 제출된 결의문을 채택해주십시오.

참고자료

울산지부 규정

울산지부 규정

제정:2001년 3월 6일

개정:2001년 11월 30일

개정:2008년 3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1조와 제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울산지부의 사무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사무실내에 두도록 한다.

제4조(설치) 울산지부는 지역지부로서 울산광역시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1. 지부는 울산지역내의 금속노동자로서 금속노조에 가입한자로 구성한다.
2. 사업장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 3) 전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배정은 지회별로 조합원 2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1명을 적용한다.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제17조(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지부임원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임원, 각종위원회 대표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칙에 의한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

제25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타 지회 선임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부지부장 2명
4. 사무국장

제28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6) 지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4) 감사에 응한다.

제29조(선출)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지부장은 개별출마하고,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5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36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38 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신설되는 지역지부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가 지부로 전환하는 경우는 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 규약과 지부 모범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다.
2. 지회장의 중앙위원 배정
 - 조합원수가 10,000명 이상인 지회의 경우 지회장을 중앙위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지회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은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지회운영규칙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4.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
 - 규정 제16조는 지회 규칙 제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 대의원의 배정은 '지부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한 배정기준'에 따른 대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규칙으로 세부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다.